

'13년 식품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자료

2013. 2.

농림수산물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목차

◆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aT 지원사업

1. 식품산업육성 5

<R&D 및 협력지원>

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식품R&D) 5

②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 9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22

② 식품산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23

③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활용 신규인력 확보 24

④ korea Food Show 2013 25

<식품·외식기업 컨설팅 지원>

① 현장코칭(경영·기술코칭) 26

② 현장코칭(직무능력향상 코칭) 27

③ 심층컨설팅(식품 경영·기술 컨설팅) 28

④ 심층컨설팅(외식 경영 · 마케팅 컨설팅) 29

⑤ 심층컨설팅(수출기반조성 컨설팅) 30

⑥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31

⑦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 32

⑧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사업 33

2. 정보제공	34
① 농수산물 무역정보(KATI)	34
② 인터넷 거래알선(AGRO TRADE)	35
③ 식품외식정보 조사 분석(FIS)	36
3. 자금지원	37
<수출사업자 지원>	
①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자금	37
② 우수 수산물 자금	38
<식품·외식업체 지원>	
①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39
②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40
③ 외식업체 육성자금	41
④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42
4. 수출지원	43
① 수출물류비 지원	43
②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45
③ 공동물류활성화 사업	46
④ 수출 농식품 인증 지원	47
⑤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52
⑥ 환변동보험 및 농축산물 수출보험	53
⑦ 수출상품화 사업	54
⑧ 국제박람회 참가	59

⑨ 해외관측행사 지원	64
⑩ 해외바이어 거래알선(Buy Korean Food)	65
⑪ 해외aT 지사화사업	66
⑫ 글로벌 K-FOOD FAIR(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및 수출홍보)	67
⑬ 해외관측행사 지원	68
⑭ 개별 브랜드 지원사업	69
⑮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공동물류센터)	70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①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78
②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80
③ 고졸근로자 등을 위한 ‘기업대학’ 지원	83
④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85
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	87
⑥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89
⑦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90
⑧ 중소기업 HRD 자문 지원(산업현장교수단)	91
⑨ HRD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프로그램	92
⑩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역량강화	93

◇ 중기청 지원사업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연계사업

1. 농공상융합형 활성화 자금 신규 지원사업	101
① 농협하나로마트 테스트판매 및 신규계약지원	101
② KFS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101

③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해외기술로드쇼 참가	102
---------------------------------	-----

2. 중소기업청 연계 지원사업	112
-------------------------------	------------

①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연계형 기술개발사업	112
------------------------------	-----

②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112
-----------------------------	-----

③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134
--------------------------	-----

④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134
---------------------	-----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135
---------------------	-----

⑥ 해외인증 획득지원	135
-------------------	-----

⑦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136
---------------------	-----

⑧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136
---------------------	-----

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진단지원	137
---------------------------	-----

⑩ 농수산물 가공·판매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	137
------------------------------------	-----

⑪ 기술보증지원	138
----------------	-----

⑫ PL단체보험 가입지원	138
---------------------	-----

2013년도 지원예산(농식품부 소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2예산 (A)	2013예산 (B)	증△감 (B-A)		비 고
				%	
【 합 계 】	264,604	273,882	10,278	3.9	
○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28,957	31,327	2,370	8.2	
○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신규)	-	5,400	-	-	
○ 식품컨설팅 - 현장코칭 - 심층 컨설팅 - 한식당, 전통주, 유기가공 컨설팅 등	3,255	3,595	340	10.4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자금 - 우수 수산물 자금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 외식업체 육성자금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160,000	147,500	△ 12,500	△ 7.8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신규)	-	600	-	-	
○ 농축산물 판매촉진 -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수산물 일부 포함) - 공동물류활성화사업 - 수출농식품 인증지원 -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 - 환변동보험 및 농축산물 수출보험	40,972	41,150	178	0.4	
○ 해외시장개척 지원 - 수출상품화 사업(수산물 일부 포함) - 국제(개별·종합)박람회 참가 - 해외 판촉행사 지원 -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 해외aT 지사화 사업 - 개별브랜드 지원사업 - 해외물류기반구축사업	31,420	27,000	△ 4,420	△ 14.1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신규)	-	17,310	-	-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aT 지원사업

1. 식품산업육성

□ R&D 및 협력지원사업

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개 요	☞ 목적 - 농수산물 연계품목 가공 및 기능성 소재개발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13년 예산 : 313억원														
지원대상	☞ 식품 관련 기업체 · 대학 · 연구소														
지원내용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6대 분야의 중점 추진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분야</th><th>핵심기술</th></tr> </thead> <tbody> <tr> <td>기능성강화 식품</td><td> ①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② 질병예방 · 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td></tr> <tr> <td>전통웰빙식품</td><td>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td></tr> <tr> <td>식품 안전 · 품질관리</td><td>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 · 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td></tr> <tr> <td>식품 핵심소재</td><td>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td></tr> <tr> <td>식품 기자재</td><td>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⑮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td></tr> <tr> <td>저탄소 · 신가공</td><td> ⑯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⑰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⑱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td></tr> </tbody> </table>	기술분야	핵심기술	기능성강화 식품	①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② 질병예방 · 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웰빙식품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식품 안전 · 품질관리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 · 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 핵심소재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 기자재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⑮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 · 신가공	⑯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⑰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⑱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기술분야	핵심기술														
기능성강화 식품	①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② 질병예방 · 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웰빙식품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식품 안전 · 품질관리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 · 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 핵심소재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 기자재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⑮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 · 신가공	⑯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⑰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⑱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추진절차	사업시행 공고 ⇒ 과제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중간평가, 진도관리,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추적평가														
추진현황 및 계획	☞ '12년 추진현황 : 281억 171과제 지원 - 계속과제 180억 109과제, 신규과제 101억 62과제 ☞ 계획 : 상반기 공고(2~3월), 선정평가(4~5월), 협약체결(6월) - 선정평가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로 진행														
이용방법	☞ 참가신청 :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031-420-6766)														

가. Project형 R&D 추진

- (전략품목 선정) 시장창출 · 선도가능성, 소비자 니즈 등을 토대로 세계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큰 품목을 선정
 - 평가기준 : ①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②매출 증가,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 ③국내에서 안정적 생산 가능성 등
 - 선정절차 : 단기 연구용역 및 자문위원회 검토, 공청회 등 실시
 - ① 연구용역을 통해 식품 분야 세계적 연구 및 시장 동향,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 등을 검토하여 전략품목 후보 도출
 - ② 식품 R&D 기획자문위원회 및 공청회를 거쳐 품목 후보 확정
- (투자규모) '13년에는 1개 품목에 20억원 투자(5년 100억원 투자)
 - 매년 1~2개의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18년까지 10개 품목 선정 목표
 - '13년과 '14년에는 1개품목 선정 '15년부터 18년까지 2개씩 선정
- (연구수행주체) 연구주체는 생산 · 판매 · 수출 능력을 갖춘 산업체가 중심이 되고, 세부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소 · 대학 등 참여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연구과제는 수행주체 자율 선정
 - 연구개발 뿐만이 아니라 제품개발, 마케팅 비용 등 폭넓게 지원 가능
 - 연구결과, 제품판매 등의 성과 확산을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 참여 유도
- (평가방식) 수행주체는 매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달성 여부 평가에 따라 연구계속 여부 결정
 - 선정평가 시 제시된 매출 증대,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 등 연차별 정량 지표의 달성여부 평가
 - 연차별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원칙
 - 불가피한 상황에 인한 목표 미달성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가능

나. 지정공모과제 비중 확대 및 도출 방식 개편

□ 선택과 집종의 전략투자를 위해 지정공모과제 비중을 확대

○ 지정공모 비중 확대 : ('12년) 30% → ('13년) 60% → ('15년) 70%

□ 6대 분야별 R&D 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도출

- ① 분야별 기술로드맵 수립 : 현재의 식품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기완료된 연구용역 결과, 학회 의견 수립 등을 반영
- ②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수립 : 기술 로드맵, 현장기술수요, 기술 발전 수준 등 동향, 분야별 이슈 등을 분석하여 투자 방향 설정
- ③ 지정공모과제 RFP : 중점 투자 방향을 기초로 지정공모과제 도출

자유응모과제

<개선방안>

가. R&D 사업비 중소기업 우선 배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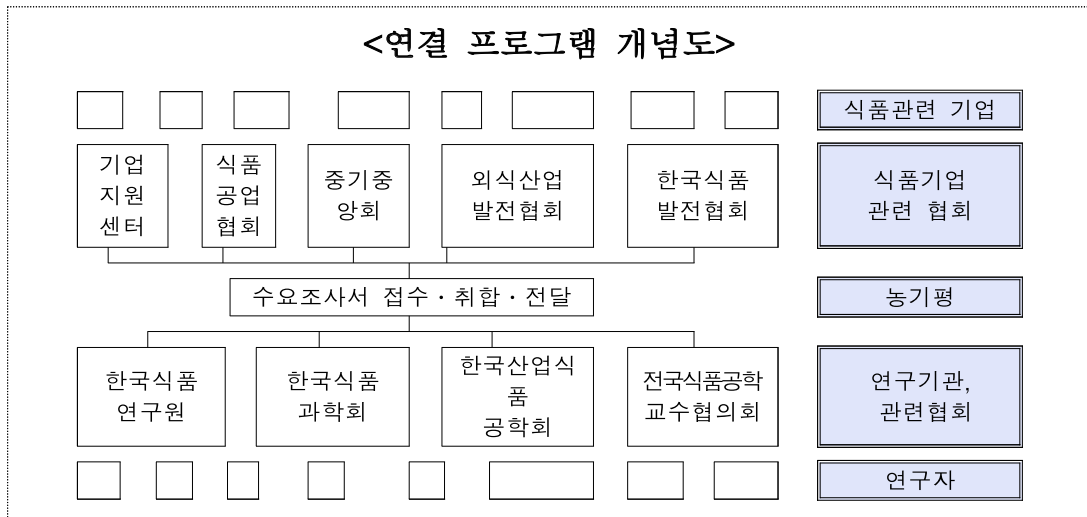
□ 자유응모과제의 중소기업 우선쿼터 배정으로 현재 50% 수준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비중을 '15년 70%까지 확대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 우선 쿼터 배정 : ('12년하) 50% → ('13년) 60%

나. 기술 수요 업체-연구자 간 연결 프로그램 도입

□ 기업의 기술 수요 아이디어를 학계·연구기관에 전달하고, 학계·연구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응모

- ① 식품기업은 기술수요를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출 →
- ② 식품관련 협회 또는 직접제출을 통해 농기평 취합 →
- ③ 취합 자료를 연구기관 관련 협회를 통해 연구자전달 →
- ④ 연구자가 수요를 검토하여 업체와 자유응모과제 준비



-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다. 중소기업의 R&D 수행·관리 역량 강화 지원

- aT 기업지원센터, 한식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컨설팅, 행정지원 실시

- aT의 현장코칭,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필요성이 도출된 경우에는 식품 R&D 사업 선정에 인센티브 부여

* 현행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과 동일 수준인 3점 가점 부여

- 중장기적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식품 중소기업의 R&D 관련 지원의 허브 역할 부여

* 역할(안) : 기술 코디네이터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애로 조사 및 현지 컨설팅,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식품중소기업 기술수요 조사 및 분석, 중소기업지원 성과 모니터링 및 지원 전략 수립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진단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

② 중소식품기업 협력 지원 사업

개요	☞ 식품·외식 관련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																																			
지원대상	☞ 복수의 식품관련 공동법인, 업무협약·융합형기업 연합체 및 협동조합 등 ① 공동법인 ②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③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④ 협동조합																																			
지원분야	☞ 공동마케팅 지원(공동 판로개척, 공동 브랜드 개발, 판촉 행사 등) ☞ 기술전문 인력 채용지원(1년 단위 단기 기업진단, 컨설팅, 기술개발 인력) ☞ 업계공동 품질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시장조사, 정보수집 비용 지원 ☞ 공동 신제품 개발 지원 ☞ 인력 교육(정부지원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은 지원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①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② 정부의 다른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받고 있는 사업																																			
지원내용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최대지원액 : 3억원)																																			
예산규모	☞ '13년 : 48억원																																			
추진절차	<table><tr><td>신청</td><td></td><td>접수</td><td></td><td>선정</td><td></td><td>사업수행</td></tr><tr><td>중소식품·외식 기업 공동조직</td><td>⇒</td><td>식품·외식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신청</td><td>⇒</td><td>선정위원회 (농식품부, aT 외부전문가 등)</td><td>⇒</td><td>선정된공동사업 수행조직</td></tr><tr><td colspan="7"></td></tr><tr><td>자금배정</td><td></td><td>점검·지도</td><td></td><td>결과보고</td><td></td><td>정산</td></tr><tr><td>⇒ aT (진도를 반영 50%씩)</td><td>⇒</td><td>aT, 농식품부</td><td>⇒</td><td>사업수행조직</td><td>⇒</td><td>aT</td></tr></table>	신청		접수		선정		사업수행	중소식품·외식 기업 공동조직	⇒	식품·외식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신청	⇒	선정위원회 (농식품부, aT 외부전문가 등)	⇒	선정된공동사업 수행조직								자금배정		점검·지도		결과보고		정산	⇒ aT (진도를 반영 50%씩)	⇒	aT, 농식품부	⇒	사업수행조직	⇒	aT
신청		접수		선정		사업수행																														
중소식품·외식 기업 공동조직	⇒	식품·외식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신청	⇒	선정위원회 (농식품부, aT 외부전문가 등)	⇒	선정된공동사업 수행조직																														
자금배정		점검·지도		결과보고		정산																														
⇒ aT (진도를 반영 50%씩)	⇒	aT, 농식품부	⇒	사업수행조직	⇒	aT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사업설명회(2월) ☞ 모집공고 : 별도공지																																			
담당자	☞ aT 기업지원팀 오세원 차장(02-6300-1645)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김형식 사무관(044-201-21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① 식품·외식 관련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

* '10년 기준 음식료품 제조업체 54천개 중 10인 미만이 전체의 92.1%인 50천개 업체

- ②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으로 발전기반을 마련

2. 주요내용

-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 ☐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정부 매칭 자금 지원

3. 예산 : 5,100백만원

- ☐ 사업비 : 사업조직 16개소×평균 사업단가 6억원×지원비율 50%
= 4,8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운영비(사업관리, 홍보, 사업평가 등) : 300백만원

4. 세부내용

가. 사업대상자

- ☐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협동조합

<사업대상자 유형>

- ① **공동법인** : 복수의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기업 등이 연합법인을 설립한 경우
- ②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 복수의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를 구성한 경우
- ③ **농공상융합형기업 또는 농공상융합형기업 간 연합체**
- ④ **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단, 공동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숙박및음식점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합산 매출액 **30억원 이상**
- ②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 ④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예시)

☐ 공동마케팅 지원

- 공동 판로 개척, 공동 브랜드 개발, 판촉 행사 등 마케팅 추진
 - 제품기획, 제품설명회, 공동물류비 등
 - 공동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작 및 포장디자인 등

☐ R&D 및 기술전문 인력 채용 지원

- 다수 기업의 공동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전문인력 채용
 - 1년 단위의 단기 기업진단-컨설팅 및 기술 개발 인력
 - * 단,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에 한함

☐ 업계공동 품질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품질관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해당부류 제조업체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
 - * 예시 : 중소식품제조업의 사업장에 적합한 HACCP 모델 개발, 관세 환급 시스템 개발 등

☐ 시장조사, 정보수집 비용 지원

- 공통 품목 또는 공동 시장을 타깃으로 대상 품목이나 대상 시장을 공동 조사
 - 참여업체 공동 현지 출장조사비, 해당부문에 대한 유료 보고서 구입비, 위탁조사 용역비 등

☐ 공동 신제품 개발 지원

-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 개발 시 연구시제품 제작 등 비용

☐ 인력 교육

- 식품기업 협력체가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소요비용 지원. 단, 정부지원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은 지원 제외

- 재직인력의 직무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현장 기술교육, 기술·경영·IT 교육, 전문자격 취득훈련 등)
- 신규인력 채용과 재직 인력 선진화를 위한 사업(공동채용박람회, 인사 담당자 교육훈련, 업종별 인력자원 관리 모델 개발 등)

☐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 ①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 ② 정부의 다른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받고 있는 사업

라.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안)

- ①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②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 용도 외 사용제한 및 별도 통장 개설에 의한 투명한 자금 관리, ③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④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⑤성과 우수 기관에는 차기 시행기관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 지원한도 : 협력사업당 3억원

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①주관부처 ②사업시행기관(aT) ③사업접수기관(협회) ④사업 수행조직으로 구분하여 추진

- 중소식품업체로 구성된 협회,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신청접수는 협회 및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만 가능

- * 사업접수기관 :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단체, 협동조합 중앙회 등
- * 예시) aT,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발전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쌀가공협회, 육가공협회, 외식산업협회, 김치협회 등

<기관 별 주요 역할>

구분	기관	역할
주관부처	농림수산물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관리감독 등
↓ ↑	↓ ↑	
사업 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 공사(aT)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 사업수행조직 공모(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시행수행조직에 사업비 지급 ○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취합. 주관부서보고
↓ ↑	↓ ↑	
사업 접수기관	협회, 단체 등	○ 사업수행조직 모집 및 추천
↓ ↑	↓ ↑	
사업 수행조직 (사업대상자)	중소식품·외식업체 공동조직/단체 * 공모에 의해 선정	○ 세부사업 수행계획 수립 ○ 공동사업수행 ○ 사업결과 보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

바. 사업자 선정

□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및 평가

- 농식품부, aT,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
- 평가 위원회는 선정 시 뿐만이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성과 평가도 수행하여 일관된 평가 체계 유지

□ 평가내용

- 사업대상자 : 공동자금 조성, 역할분담, 사업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등 포함

<사업수행조직 선정지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1.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연계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2. 사업추진 여건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역량 ◦ 참여업체의 추진의지(부담금 등) ◦ 참여업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30
3.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 참여업체 구성의 적합성 ◦ 신청부문 관련 사업추진 실적 ◦ 해당 사업 추진성과 ◦ 지원 실효성 - 향후 발전가능성 - 기대효과(일자리 창출 실적 및 계획 필수 포함)	30
4. 사업비	◦ 사업비 규모,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5. 매출규모	◦ 참여업체의 매출액 규모 ◦ 참여업체의 최근 매출 증가율	10
합 계		100

사. 자금배정 및 관리

- (자금배정) 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사업수행조직) 별 예산배정
 - 지급방법 : 배정예산은 참여조직 명의로 개설된 공동통장으로 입금
 - 지급시기 : 공동자조금 50% 이상 집행시 50%, 최종완성시 나머지 50%
 -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관리) 동 사업시행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대상자의 자조금 집행현황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에 지급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

<붙임 1>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예) 공동마케팅, 인력매칭, 시장조사			
수행조직	조직명 (또는 대표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웹사이트			
총괄책임자 (수행주체업체)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사업비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요청액 :		
	민간현금	총액 :	참여업체별 : A() B() C() D() E()	
	합 계		참여업체별 : A() B() C() D() E()	
사업기간	2013 . . ~ 20 . . (개월)			
참여업체	*최소 2개 이상의 식품·외식업체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지침 등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중소기업협력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인)				
붙임 : 1. 공동조직 법인등기부 등본 / 협약서 (*협약체결업체)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계획서 (요약 1~2쪽 포함) 4. 자조금 조성 증빙 (공동명의 통장사본 등) 5. 출자지분확인서(협약체결업체) 6. 재무제표(최근 3개년) * 매출액 증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사업 계획서

목 차

[요약서]

1. 사업개요

- 가. 사업 내용
- 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 1) 수행조직 소개
 - 2) 참여업체 소개
 - 3) 참여인력현황
 - 4) 참여업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 * 자조금 분담내역 포함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가. 사업목표
- 나.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 다. 기대효과

3. 세부추진계획

- 가. 세부 추진계획
- 나. 신청분야 사업 과거 추진실적 및 성과

4. 사업비

- 가. 총 사업비
- 나.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

5. 기 타

- 가. 참여업체별 매출액
- 나. 매출증가율 (최근 3개년)
- 다. 일자리 창출 계획

[참고]

- 1.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 2. 수행조직 및 참여업체 현황
- 3. 참여업체별 부담금(자조금) 내역

[참고 1]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업체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특기사항

- 사업수행 능력 관련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 예) 관련 사업 추진경험, 정부정책사업 수행실적, 자격 보유현황, 수상경력 등

[참고 2]

수행조직 및 참여업체 현황

□ 수행조직명 :

□ 조직유형 : 공동법인, 협약체결 등

구 분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직위	주요경력	최종학력	연락처
수행조직	총괄 책임자명				Tel Fax Email
참여업체A	참여자 성명				
참여업체B	“				
참여업체C	“				
참여업체D	“				
참여업체E	“				
· · ·					

* 참여인원은 실제 공동추진사업에 동원되는 인력만 기재할 것

[참고 3]

수행조직 참여업체별 민간부담금 부담내역

(1) 수행조직

(단위 : 천원)

구 분 조직명	현 금	(현 물)	합 계

(2) 참여업체

(단위 : 천원)

구 분 업체명	현 금	(현 물)	합 계

□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개 요	☞ 식품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전문식품인력 양성
사업분야	☞ 식품산업 분야별 전문가양성(장단기 교육실시, 농식품유통교육원) - 분야별 교육과정(44개) 운영으로 1·2·3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육성 ☞ 국내 식품인력교육기관 Control Tower 기능 및 역할수행 - 식품인력양성과정 표준교육모델 및 교육운영매뉴얼 개발제공 - 전문교육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교육과정	☞ aT 교육원 자체교육 - 장기교육 (2) : 식품산업경영인전문가, 외식산업경영인전문가 - 중기교육 (2) : 농식품수출전문가, 고부가·기능식품 개발 - 단기교육(15) : 식품기업원가관리, 창조경영과 성공적 영업관리, 식품특허·상표권관리, 식품표시기준 및 규격, 마케팅전략수립과 상품개발, SNS활용농식품마케팅, 농식품수출 및 FTA원산지실무, 식품클레임대응기법(주·야간), 생산성극대화와 문제해결실습, 식품5S 및 세척·살균, 이물관리를 위한 공정개선, 식품품질관리, 위해요소분석 및 HACCP현장설계, 농식품포장재 및 포장기술, 외식업경영혁신, 브랜드마케팅 성공전략(야간) - 사이버교육(3) : 뉴미디어를통한농식품온라인마케팅, 식품이물관리실무, 식품품질관리실무 ☞ 외부위탁교육(22) : 전통·발효식품, 한식, 기능성식품, 식품제조기술, 식품기계산업, 소스제품개발, 음료제품개발, 관능검사실무, 식품일반미생물검사, 병원성미생물검사, 유통기한설정 시험, 소규모HACCP
교육대상	☞ 식품제조·가공·외식·유통·수출·식자재·급식업체 임직원, 농어민, 농어민단체 임직원 등
지원내용	☞ 장기과정 : 1인당 교육비 400만원 중 230만원 국고지원(58%) ☞ 중기과정 : 1인당 교육비 74만원(자부담비 5만원) ☞ 단기과정 : 1인당 12만원(1일/자부담비1만원), 24만원(2일/자부담비 2만원), 34만원(3일/자부담비 3만원)
교육신청	☞ 홈페이지(http://edu.at.or.kr), E-mail 이용
추진현황 및 계획	☞ 교육진행 중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하경희 사무관(044-201-2122)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교육팀(031-400-3530~8) ☞ 장기과정 : 식품산업경영인전문가(031-400-3531, 윤석환 차장), 외식산업경영인전문가(031-400-3534, 박소연 대리) ☞ 단기과정 : 식품클레임대응기법 등 15개 과정(031-400-3537, 이경미 과장) ☞ 사이버교육 : 식품이물관리실무 등 3개 과정(031-400-3537, 이경미 과장)

② 식품산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개 요	☞ 식품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채용예정자 교육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교육사업
사업분야	☞ 식품산업 분야별 전문가양성(장단기 교육실시, 한국식품산업협회) - 분야별 교육과정(24개) 운영으로 식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과정	☞ 한국식품산업협회 - 장기과정 (2) : 생산혁신과 해외사례연구, 채용예정자훈련 - 단기과정(22) : 식품원료 및 자재품질관리, 원가혁신, 생산성향상과 국내 사례연구, 이화학분석기초, 식품분석 심화, 기초미생물 검사, 심화미생물검사, 식품유통기한설정 및 연장기술, 식품 포장의 위생과 안전관리, 식품기업 위생점검 매뉴얼개발, 이물관리 및 분석, 안전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소기업 맞춤 HACCP, 저나트륨 식품제조, 가공식품별 제품개발 (주류, 발효식품, 육류, 수산물, 쌀가공등), 상품기획과 마케팅, 외식산업 서비스 실무, 수출검역체계 및 무역통상 (미국, 일본, 중국), 식품산업입문, 식품산업동향과 정책, 식품기업 녹색경영, 기능성식품개발
교육대상	☞ 식품제조·가공·외식·유통·수출업체 등 중소기업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
지원내용	☞ 장기과정 - 생산혁신과 해외사례연구 : 국고지원(60%), 자부담금(40%) - 채용예정자훈련 : 국고지원(100%) ☞ 단기과정 : 국고지원(100%)
교육신청	☞ 홈페이지(http://KFIA.or.kr), jaedeux@kfia.or.kr 이용
추진현황 및 계획	☞ 참여기업 협약(3월), 교육실시(4월-11월)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하경희 사무관(044-201-2122)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교육팀(02-3470-8120, 8126) ☞ 장기과정 : 이효순 팀장(02-3470-8126) ☞ 단기과정 : 심재현 대리(02-3470-8120)

③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활용 신규인력 확보

개 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활용하여 농식품 분야 배정인원을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수립하여 농식품 분야 취업인력을 식품 분야 사업장(기업)에 인력공급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농식품 분야 취업인력 - 만15세~29세 이하 미취업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장
지원분야	- 정규직 유도를 위한 단계적 관리 -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140개사) 등과 연계한 홍보 - 인턴희망자 모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설 농업인재개발원 등과 연계한 홍보 - 참여업체 및 인턴희망자 대상교육 안내 및 실시 - 채용약정 유지여부 확인 및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지원내용	100% 국고보조 -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이내) - 정규직 전환 7개월 유지시 6개월간 65만원 추가지원
추진절차	계획수립 ⇒ 청년취업인턴제 재 위탁 운영 약정 (3월) ⇒ 한국식품산업협회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운용 (‘13.4 ~ ‘13.10) ⇒ 실적확인 (‘13.11)
신청방법	- 모집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및 안내문 별도 공고 ⇒ 홈페이지와 안내문 참고하여 신청(팩스 또는 우편)
추진현황 및 계획	배정인원 목표 : ‘13년(200명) → ‘14(500) → ‘15~‘17(2,000)
담당자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하경희 사무관(044-201-2122)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김좌린 팀장(02-3470-8123)

④ Korea Food Show 2013

개최목적	☞ 국내 농식품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하여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업계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정보 교류 확대 ☞ 우리 농식품과 한식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수출 100억불 달성 기여 및 한식세계화 도모
개최개요	☞ 개최일시 : '13. 5. 14(화) ~ 17(금) <4일간> ☞ 개최장소 : 일산 KINTEX ☞ 주최/주관 : 농식품부 / aT, 코트라, 킨텍스, 식품산업협회 ☞ 주요행사 : 전시·컨벤션·컨퍼런스·바이어상담회 및 이벤트 등 ☞ 전시품목 -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가공품, 친환경/유기농 쌀, 일반식품, 발효식품, 급식자재, 조리기기 및 주방기기, 급식기자재 등 식품산업 관련 전품목
추진현황 및 계획	☞ 전시 대행사 선정(3월) ☞ 전시 및 컨퍼런스 참가업체 모집(3월~4월) ☞ 전시장 설치(5.10~) * 상기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하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배우용 주무관(044-201-2113) ☞ 행사 전반사항(기업전시 참여) 문의 - 배민식 팀장(02-6300-1301), 김서령 차장(02-6300-1306)

식품·외식 컨설팅 지원

① 현장코칭(경영·기술코칭)

개요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경영·기술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식품·외식 전문가의 현장 방문지도를 통하여 경영효율화, 기술향상 제고
지원대상	경영·기술분야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분야 : 외식업체(한식당) 수출분야 : 유통 수출업체
지원분야	경영·기술코칭 - 경영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인사, 디자인 - 기술분야 : 가공기술, 공정개선, 위생관리, 법규준수, 품질관리, 제품개발, 공장 신설·증축 - 외식분야 : 경영개선(메뉴, 위생, 마케팅) - 수출분야 : 수출정보, 관세 정보 등
지원내용	업체당 컨설팅비 120만원 중 110만원 국고지원(92%) - 업체 자부담 10만원
예산규모	'13년 : 252백만원
추진절차	① 공고 → ② 지원업체 신청 → ③ 애로사항 상담 → ④ 자부담 입금 안내 → ⑤ 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⑥ 현장지도(진단 및 코칭) → ⑦ 완료·만족도 조사
신청방법	모집공고 : www.at.or.kr, www.foodbiz.or.kr 식품포털 홈페이지 ⇒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추진현황 및 계획	경영·기술코칭 : 공고 후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한병윤 주무관(044-201-2120) 컨설팅팀 이동호 대리(02-6300-1738)

② 현장코칭(직무능력향상 코칭)

개 요	☞ 중소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인 위생, 품질 및 경영관리에 대한 집합컨설팅을 제공
지원대상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aT 지사 관내 식품·외식업체
코칭분야	☞ 직무능력향상 코칭 - 경영분야 : 생산성향상(원가절감, 실적관리, 개선활동 등) - 기술분야 : 위생관리, 품질관리 - 외식분야 : 위생관리, 서비스 교육 - 1 : 1 전문가 현장 상담
지원내용	☞ 100% 국고보조
예산규모	☞ '13년 : 33백만원
추진절차	☞ ①aT지사 관내 공문 발송(시, 도) → ② 기초 지자체 선정 → ③ 업체 대상 → ④ 지자체별 직무능력향상 코칭 및 현장 상담
신청방법	☞ 모집 안내 : aT 지사 주관 지자체에 별도 공고 ⇒ 안내문 확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추진현황 및 계획	☞ 별지 공고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한병윤 주무관(044-201-2120) ☞ 컨설팅팀 이동호 대리(02-6300-1738)

③ 심층컨설팅(식품 경영·기술 컨설팅)

개 요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영효율화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 학교급식 농수산물 공급 확대 지원사업 및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경영체 포함
지원분야	- 경영개선 : 식품관련 경영·기술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지도 - 기술 : 소규모 HACCP 지정, 전통식품인증, 제품영양설계, 유통기한 설정 - 경영 : 온라인 홍보 설계(웹 디자인 분야, SNS), 상품 마케팅(스토리텔링 설계, 구매 선호도 개선), 포장디자인 - 지속성장 : 식품관련 경영·기술 지도를 통한 지속성장 - 기술 : 인증(HACCP, ISO22000, 건강기능식품 GMP, 탄소성적), 상품 (소비자 맛 선호도 향상, 식품안전, 신상품 개발), 가공기술 (지적재산권 설계, 유통기한 설정, 생산성 향상) - 경영 : 경영(경영전략, IT, 물류효율화, 사회공헌(PR), 전자상거래), 마케팅 (유통채널 영업전략, 홍보전략, 고객관계관리(CRM), 브랜드·디자인 전략, 상품차별화 전략) - 종합컨설팅 : 경영, 기술 2개 분야 컨설팅 동시 지원으로 시너지 창출 * 지속성장 컨설팅 분야에서 선택
지원내용	- 경영개선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속성장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 종합컨설팅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 2,000만원 한도)
예산규모	700백만원(경영개선 170백만원, 지속성장 430백만원, 종합 100)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접수 → ③ 예비 선정 → ④ 기업(종합)진단 → ⑤ 지원업체 선정 → ⑥ 컨설팅사 매칭 → ⑦ 수행계획서 작성 → ⑧ 수행 계획서 검토 → ⑨ 자부담납입 및 계약체결 → ⑩ 컨설팅 착수 → ⑪ 중간점검 → ⑫ 컨설팅 완료 → ⑬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⑭ 최종 평가 → ⑮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공고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한병운 주무관(044-201-2120) - aT 컨설팅팀 정나리 대리(02-6300-1739)

④ 심층컨설팅(외식 경영 · 마케팅 컨설팅)

개 요	중소 외식업체의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가 업체를 방문하여 심층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국내 외식업체 또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분야	- 경영개선 : 외식업체 운영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지도 - 운영개선(상품, 위생, 서비스 등), 교육훈련, 마케팅 - 지속성장 : 외식업체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 - 경영 · 마케팅 맞춤 : 경영 전략, 홍보 · 마케팅 전략, 종업원 교육, 고객 서비스, 업종전환, 입지선정 조사, 브랜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등 - 메뉴 : 신 메뉴 개발 및 조리법 전수
지원내용	- 경영개선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속성장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예산규모	250백만원(경영개선 80백만원, 지속성장 170백만원)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접수 → ③ 예비 선정 → ④ 기업(종합)진단 → ⑤ 지원업체 선정 → ⑥ 컨설팅사 매칭 → ⑦ 수행계획서 작성 → ⑧ 수행 계획서 검토 → ⑨ 자부담납입 및 계약체결 → ⑩ 컨설팅 착수 → ⑪ 중간점검 → ⑫ 컨설팅 완료 → ⑬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⑭ 최종 평가 → ⑮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공고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한병윤 주무관(044-201-2120) - aT 컨설팅팀 정나리 대리(02-6300-1739)

⑤ 심층컨설팅(수출기반조성 컨설팅)

개 요	☞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컨설팅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수출기반 조성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국내 농어업 법인체 ☞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 국내 농식품 도소매업체
지원분야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문 컨설팅 - 농수산물식품 시장개척, 무역실무, 현지화 등 수출기반조성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예산규모	☞ '13년 : 150백만원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② 접수 → ③ 예비 선정 → ④ 기업(종합)진단 → ⑤ 지원업체 선정 → ⑥ 컨설팅사 매칭 → ⑦ 수행계획서 작성 → ⑧ 수행 계획서 검토 → ⑨ 자부담납입 및 계약체결 → ⑩ 컨설팅 착수 → ⑪ 중간점검 → ⑫ 컨설팅 완료 → ⑬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⑭ 최종 평가 → ⑮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공고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담당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한병윤 주무관(044-201-2120) ☞ aT 컨설팅팀 정나리 대리(02-6300-1739)

⑥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개 요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부·중기청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분야	☞ 경영개선 : 식품관련 경영·기술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지도 - 기술 : 소규모 HACCP 지정, 전통식품인증, 제품영양설계, 유통기한 설정 - 경영 : 온라인 홍보 설계(웹 디자인 분야, SNS), 상품 마케팅(스토리텔링 설계, 구매 선호도 개선), 재무 ☞ 지속성장 : 식품관련 경영·기술 지도를 통한 지속성장 - 기술 : 인증(HACCP, ISO22000, 건강기능식품 GMP, 탄소성적), 상품 (소비자 맛 선호도 향상, 식품안전, 신상품 개발), 가공기술 (지적 재산권 설계, 유통기한 설정, 생산성 향상) - 경영 : 경영(경영전략, IT, 물류효율화, 사회공헌(PR), 전자상거래), 마케팅 (유통채널 영업전략, 홍보전략, 고객관계관리(CRM), 브랜드·디자인 전략, 상품차별화 전략), 재무관리 - 수출 : 시장개척, 무역실무, 현지화 등 수출기반조성
지원내용	☞ 경영개선 : 컨설팅 비용의 70%지원(업체별 최대 700만원 한도) ☞ 지속성장 : 컨설팅 비용의 70%지원(업체별 최대 1,400만원 한도)
예산규모	☞ '13년 : 500백만원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② 접수 → ③ 예비선정 → ④ 기업진단 → ⑤ 지원업체 선정 → ⑥ 컨설팅사 매칭 → ⑦ 수행계획서 작성 → ⑧ 수행계획서 검토 → ⑨ 자부담납입 및 계약체결 → ⑩ 컨설팅 착수 → ⑪ 중간점검 → ⑫ 컨설팅 완료 → ⑬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⑭ 최종평가 → ⑮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모집공고 : www.aT.or.kr 홈페이지 ⇒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김호관 사무관(044-201-2122) ☞ aT 컨설팅팀(02-6300-1734)

⑦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

개 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국제수준의 유기식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기농업과 연계된 유기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유기식품산업 활성화
지원대상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지원내용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비의 100%(4백만원 한도) - 해외 유기인증 심사비 및 컨설팅비용의 100%지원(3백만원 한도) ※ 해외인증지원분야 : NOP(미국), JAS(일본), EEC834/2007(EU), COFCC(중국), COR(캐나다) 인증 컨설팅 및 심사비 지원(기타 국가는 검토 후 지원)    
예산규모	'13년 : 245백만원 - 국내 유기가공식품인증컨설팅 200백만원 - 해외 유기가공식품인증 심사비 45백만원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 식품업체 대상사업 홍보 및 안내 ⇒ 지 원 신 청 (신청업체→aT)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신청방법	- 모집공고 : www.aT.or.kr 홈페이지 ⇒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추진현황 및 계획	모집 공고 후 접수 기간내 접수
담당자	aT 컨설팅팀 정규영 과장(02-6300-1733)

⑧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사업

개 요	☞ 국내·외 한식 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 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식당 경쟁력 제고 지원
지원대상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 기업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 및 한식관련 기업
지원내용	☞ 해외진출 한식당 전문컨설팅 - 사업내용 : 국내·외 한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심층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총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보조 * 지원대상 선정 :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 사업내용 : 해외 한식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약식 컨설팅 제공 - 지원조건 : 자부담 100만원 * 지원대상 선정 :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추진절차	☞ 전문컨설팅 : ① 수진기업 신청서 접수 → ② 수진기업 선정 → ③ 컨설팅사 공고 → ④ 컨설팅사선정 → ⑤ 계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입 → ⑥ 세부수행 계획서 제출 및 점검 → ⑦ 컨설팅실시 및 점검 → ⑧ 컨설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 방문컨설팅 : ① 수진기업 신청서 접수 → ② 수진기업 선정 및 자부담금 납입 → ③ 컨설팅사 공고 → ④ 컨설팅사선정 → ⑤ 계약체결 → ⑥ 세부수행 계획서 제출 및 점검 → ⑦ 컨설팅실시 및 점검 → ⑧ 컨설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 및 계획	☞ 2월 모집 예정
담당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외식진흥팀 이윤숙 사무관(044-201-2155) ☞ aT 컨설팅팀 김원규 차장 (02-6300-1732)

2. 정보제공

①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개요	☞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물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 농수산물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 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무역정보														
지원내용	☞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내용</th></tr> </thead> <tbody> <tr> <td>품목정보</td><td>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td></tr> <tr> <td>해외시장정보</td><td>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정보</td></tr> <tr> <td>수출안전정보</td><td>농약/첨가물, 수출검역제도, 국별통관검역, GAP인증, 안전성 정보</td></tr> <tr> <td>수출지원정보</td><td>지원사업소개, 수출실무, 지원조직, 지원사업공고</td></tr> <tr> <td>수출입통계</td><td>수출입통계, 해외가격통계</td></tr> <tr> <td>자료실</td><td>수출입동향, 정기간행물, 발간책자</td></tr> </tbody> </table> ☞ KATI News-letter 발행 : 주1회(월)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 ☞ 수출정보 SOS 서비스 운영: 개별 특화요구 정보를 일대일 맞춤형 정보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품목정보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	해외시장정보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정보	수출안전정보	농약/첨가물, 수출검역제도, 국별통관검역, GAP인증, 안전성 정보	수출지원정보	지원사업소개, 수출실무, 지원조직, 지원사업공고	수출입통계	수출입통계, 해외가격통계	자료실	수출입동향, 정기간행물, 발간책자
구분	서비스내용														
품목정보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														
해외시장정보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정보														
수출안전정보	농약/첨가물, 수출검역제도, 국별통관검역, GAP인증, 안전성 정보														
수출지원정보	지원사업소개, 수출실무, 지원조직, 지원사업공고														
수출입통계	수출입통계, 해외가격통계														
자료실	수출입동향, 정기간행물, 발간책자														
예산규모	☞ '13 : 약 31억원(무역정보 조사 : 27억원, 무역정보 전파/KATI 운영 : 3.7억원)														
이용방법	☞ 기본이용 : KATI 홈페이지 접속(www.kati.net) ⇒ 회원가입 ⇒ 정보이용 ☞ 수출정보 SOS : KATI(www.kati.net) 접속 ⇒ 메인 왼쪽 하단에 수출정보 SOS 클릭 ⇒ 필요정보 내역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 수출관련정보 통합을 통한 One-stop 정보제공 ☞ 수출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 수출현안·이슈분석 정보 제공 : 월간 aT Focus														
담당자	☞ aT Focus - aT 식품수출정보팀 서현동 차장(02-6300-1392) ☞ KATI 회원가입 및 이용 - aT 식품수출정보팀 김희진(02-6300-1395) ☞ 수출정보 SOS - aT 식품수출정보팀 이나래 사원(02-6300-1408)														

② 인터넷거래알선(AGRO TRADE)

개요	☞ 인터넷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상설 해외 홍보, 전문화된 인터넷 마케팅 기법으로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과 무역 거래 알선으로 저비용 수출 판로 개척 및 자력 인터넷수출 지원(www.AgroTrade.net)
지원대상	☞ 스마트 마케팅 : 농식품 수출업체 ☞ 한국 농식품 거래알선 : 농식품 수출업체, 해외 바이어
지원내용	☞ AgroTrade 스마트 마케팅 지원 - 빠르게 확산 중인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QR코드로 연결하는 스마트 카다로그와 모바일웹,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최신 마케팅 지원 - 인터넷 수출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50개)하여 제반 무역 프로세스 대행 - 수출상품 스마트 카탈로그 제작 배포, 프로모션, 바이어리스트 및 신용정보 제공 - 인터넷 무역의 전문가 그룹을 가진 업체를 통해 집중 지원 ☞ 수출 농식품 거래 알선 - 수출 상품 및 Selling Offer, 바이어의 Buying Offer 등록 및 검색 ☞ 수출 지원 정보 제공 - 국내외 뉴스 및 타 사이트 오피 정보 자동수집 제공 ☞ AgroTrade 바이어 상담회 관리 시스템으로 초청 상담회 운영 - 바이어 초청 상담회 신청시 AgroTrade 회원 가입 필수 ☞ 한↔일·중·영어 간 자동번역, 화상상담 시스템, 웹메일, PC원격 지원
예산규모	☞ '13년 : 253백만원 (스마트 마케팅 120, 프로모션 43, 시스템운영 90)
추진절차	계획 수립 ⇒ 모집공고 (5월) ⇒ 전문대행사 / 지원업체선정 ⇒ 사업수행 (‘13.5~‘14.4) ⇒ 고객설문 및 사이트 방문자 분석 (‘13.12) ⇒ 실적확인 (‘14.4)
이용방법	☞ www.AgroTrade.net 접속 ⇒ 회원가입 ⇒ 업체, 상품 및 오피 정보 수시 수정 ☞ 스마트마케팅 지원 신청 : www.AgroTrade.net 접속 ⇒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AgroTrade 스마트 마케팅 지원 : '13. 50개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예정 ☞ 수출 농식품 거래 알선 : 년중 24시간 수행
담당자	☞ aT 식품수출정보팀 - 김현영 과장(02-6300-1403)

③ 식품외식정보 조사분석(FIS)

개 요	☞ 식품산업 종사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
지원대상	☞ 식품산업 관련 기업,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일반국민 등
지원내용	☞ 식품통계정보 ○ 식품통계 : 국내외 주요 식품통계표 122개 - 국내통계 : 식품산업 관련지표,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으로 구분 - 국외통계 : 주요지표, 미국·일본·유럽연합식품통계로 구분 * 시계열표로 가공하여 제공 ○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 조사 통계 : 년도별 통계표(2008~2009) - 식품제조업, 유통업, 외식업, 소비자통계로 구분 ☞ 식품산업동향 : 식품산업 정부 및 유관기관, 학계, 업계 등의 최근 주요 소식 및 동향정보를 일일단위로 제공 ☞ 식품산업연구보고서 : 식품산업 주요부문별 전문조사자료 및 연구보고서 - 가공식품세분화시장 현황조사 (품목별) - 식품산업 주요지표 (각년도)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정보 조사 (국가별) -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보고서 (각년도) -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 기타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 정보 및 보고서 등 ☞ 식품 관련 전문DB : 국제 원자재 가격정보(32품목), 식품기업정보(5,763업체) 등
예산규모	☞ '13년 : 1,322백만원 (통계정보조사·DB도입 738, 식품정보분석고도화 300, FIS운영 191)
추진절차	예산/사업시달 (농식품부) ⇒ 정보조사 및 수집 (aT) ⇒ 조사결과 분석 및 가공, DB구축 ⇒ 정보전파 (FIS, 책자배포)
이용방법	☞ 인터넷 서비스(FIS 홈페이지) 제공 - 홈페이지 : http://fis.foodinkorea.co.kr
추진현황 및 계획	☞ 식품통계표,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표 FIS 일괄 업로드(5월 중) ☞ 품목별 세분화시장 현황조사 ☞ FIS 사이트 개편 '13. 2월 완료
담당자	☞ aT 식품수출정보팀 - 김지연 과장(02-6300-1397)

3. 자금지원

□ 수출사업자 지원

①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

개 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생산자 단체, 농업인 포함)										
지원내용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3.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4.0% (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대출기간 : 1년이내 ☞ 사업의무 : 중소기업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대기업 (대출금액의 100% 이상 수출) ☞ 배정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사업의무 달성 가능액(최대 150억원) ☞ 자금배정 및 지원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정기지원</th><th>수시지원</th></tr> <tr> <td>배정시기</td><td>지원대상 선정과 동시에 배정(2월)</td><td>연중 수시선정 및 배정</td></tr> <tr> <td>배정기준</td><td>직전년도 수출실적 70% 전전년도 수출실적 30% 반영한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td><td>수출신용장(L/C) 80%, 수출계약서 30% 또는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td></tr> </table>		구분	정기지원	수시지원	배정시기	지원대상 선정과 동시에 배정(2월)	연중 수시선정 및 배정	배정기준	직전년도 수출실적 70% 전전년도 수출실적 30% 반영한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수출신용장(L/C) 80%, 수출계약서 30% 또는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구분	정기지원	수시지원									
배정시기	지원대상 선정과 동시에 배정(2월)	연중 수시선정 및 배정									
배정기준	직전년도 수출실적 70% 전전년도 수출실적 30% 반영한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수출신용장(L/C) 80%, 수출계약서 30% 또는 수출실적 기준 자금배정									
예산규모	☞ '13년 예산 : 340,974백만원(정기 328,974 / 수시 12,000)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지원안내 신문공고 (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신규업체 연중) ⇒ 대 출 (희망시기) (여신약정 · 담보취득) ⇒ 사업추진 (수출이행) ⇒ 사후관리 (수출실적 증빙확인)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또는 수출 신고 사본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사후관리	☞ 대출금 부당사용 : 대출중단 및 정상금리의 위약금 별도 징구 ☞ 사업의무 미달 : 대출중단 및 위약금(사용기간*위약금리) 징구 - 자부담(20%) 사업비 미만 : 2년간 대출중단 및 위약금 징구 - 자부담이상 사업의무액 미달 : 위약금 징구 ☞ 지원업체 평가(평가지기 : 매년 1/4분기) - 사업의무액 이행실적, 수출신장율,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등 평가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정미영 사무관, 양호섭 주무관(044-201-2177) ☞ aT 자금지원팀 한승희 차장(02-6300-1152)										

② 우수 수산물 자금

개 요	☞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수출용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수출하는 업체(활어패류 등은 가공과정이 없는 경우는 가공과정 제외)
지원내용	☞ 재원 : 수산발전기금 ☞ 용도 : 수산물 수출을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 지원금리 : 생산자단체 연 3.0% / 일반업체 연 4.0% (단, 지원업체 사업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구매 및 수출이행 ☞ 배정최고한도 : 50억원 ☞ 배정기준 -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 80%, 당해연도 선적분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20%로 가중치 산출하여 배정 - 지원업체 종합평가결과 우량업체는 평점에 50%, 유망업체는 30%의 가점을, 미흡업체는 30% 감점하여 배정
예산규모	☞ '13년 예산 : 134,000백만원(aT 80,400 수협중앙회 53,600)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안내 신문공고(1~2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3월) ⇒ 대출 (지원희망시기) ⇒ 정산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가공업체),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한국무역협회장,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확인),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사본 등 ※ 홈페이지 안내 및 양식 다운 로드 - aT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수협중앙회(http://www.suhyup-bank.com >> 금융상품물 >> 수산정책자금물 >> 수산발전기금)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사업지원 신청 접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중 ☞ 향후계획 : 자금배정 후 사업자 필요시기에 대출실행
담당부서	☞ aT 자금지원팀 김상백 차장(02-6300-1151) ☞ 수협중앙회 수산금융부 신원호 차장(02-2240-8525)

식품·외식업체 지원

①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개 요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하여 가공하는 업체에 원료 구매비를 융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자격 : 식품가공업체 지원품목 : 국내산 농식품 가공원료 농산물
지원내용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 도 : 농식품 가공을 위한 원료농산물 구매비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 연 3.0% / 일반업체 연 4.0% 대출기간 : 1년 (전통주류 가공원료수매자금 2년) 배정기준 : 가공원료 수매실적 및 수매계획에 따라 배정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외식전처리는 10억원이내)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산 농산물 원료수매
예산규모	'13년 예산 : 57,777백만원 - 일반가공 42,677, 외식및전처리 7,100, 국산밀가공 8,000
추진절차	① 지원공고(1월초, aT홈페이지) → ② 신청 접수(각 지사, 1월) → ③ 사업자 선정(각 지사, 2월) → ④ 자금배정(본사, 3월) → ⑤ 담보취득 및 대출실행(각 지사, 사업자 희망시기) → ⑥ 대출금 회수(각 지사, 상환 만기일) → ⑦ 사업정산(각 지사,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전통주류제조업체는 주류제조면허허가증 사본 1부 추가)
추진현황 및 계획	사업지원 신청 접수하여 사업자 선정 중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
담당부서	aT 자금지원팀 한승희 차장(02-6300-1152)

②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개 요	☞ 식품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 식품업체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	☞ 식품안전인증(HACCP, GMP 등) 개보수를 받고자하는 식품제조업체(신선편이업체 포함) 및 농식품수출업체 ☞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품질인증을 받은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체 ☞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 하는 업체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 기타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50%이상인 업체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일반업체 4% / 농업경영체 3%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소규모창업지원 운영자금)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용 도 : 농식품 제조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 * 소규모창업지원 운영자금은 국내산 원료구입 등 운영비 - 사업의무 : 식품안전인증 획득 추진 업체는 2년 이내에 정부인증 획득
예산규모	☞ '13년 예산 : 363억원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4월) ⇒ 대 출 (담보제공 및 여신약정체결 후 기성고에 의거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2013년 자금 지원신청 접수 중 - 접수기한 : '13.3.20(수) / 사업자 선정 및 배정 : 4월
담당부서	☞ aT 자금지원팀 한승희 차장(02-6300-1152)

③ 외식업체 육성자금

개 요	☞ 외식업체 지원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지원대상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직영·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커피·주류업체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일반업체 4% / 농업경영체 3% - 대출기간 : 시설자금 5년 이내(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 이내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 용 도 :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및 점포개설, 시설증설 및 개보수비 등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운영자금)
예산규모	☞ '13년 예산 : 30억원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4월) ⇒ 대 출 (운영자금 : 지원희망시기 시설자금 : 기성고에 의거 지급) ⇒ 정 산 (운영자금 구매실적 확인)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가맹점 계약서, 가맹점점포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증빙서류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2013년 자금 지원신청 접수 중 - 접수기한 : '13.3.20(수) / 사업자 선정 및 배정 : 4월
담당부서	☞ aT 자금지원팀 한승희 차장(02-6300-1152)

④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개 요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자부담 20% 이상) - 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 구입비 등 소요비용 ☞ 자금배정 및 지원 - 배정시기 : 4월 - 자원지원 : 담보제공 및 여신약정체결 후 기성고에 의거 지급 ☞ 기성고 확인 및 자금지원 :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과 동일
예산규모	☞ '13년 예산 : 172억원
추진절차	☞ 신청절차 및 시기 - 지원안내 공고 : 매년 1월 중 aT 홈페이지에 다음연도 지원계획 공고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매년 1~3월중 공사 각 지사(서식은 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영업허가(신고)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등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매년 4월
추진현황 및 계획	☞ 2013년 자금 지원신청 접수 중 - 접수기한 : '13.3.20(수) / 사업자 선정 및 배정 : 4월
담당부서	☞ aT 자금지원팀 김상백 차장(02-6300-1151)

4. 수출지원

① 수출물류비 지원

개요	수출물류비의 지원한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를 합산하여 수출업체에게 지원
지원대상	-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25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채소류ID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하여 지원 (일본 채소류ID 대상품목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깻잎) - aT 주관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은 협의회회원사에 한해 지원 (협의회품목 :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단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전통주, 막걸리, 유자차) - 지자체 :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지원품목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가공품, 녹차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 단,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운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10%/수출업체)와 지자체(25%/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 '13.1.1~12.31 수출물량에 대해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매월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 지원액 = 수출물량 × 품목별 · 국가별 지원단가
추진절차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서 접수 (매월 5일까지)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연중지원
이용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지원신청서(전산출력)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지사)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정미영 사무관, 양호섭 주무관(044-201-2177)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이지재 차장(02-6300-1352), 홍장우 사원(02-6300-1358)

<참고> aT 지사별 수출물류비 담당자

시도	지사	지사담당자	전화
경기	서울경기지사	강인구 과장/ 김혜진 과장	02)820-2353
인천	인천지사	최태은 대리	032)888-6163
강원	강원지사	박덕준 과장	033)647-0061
충북	충북지사	김동범 차장	043)273-4556
충남	대전충남지사	배선미 과장	042)488-8544
전북	전북지사	하성용 차장	063)211-0447
전남	광주전남지사	김지일 대리	062)940-7014
경북	대구경북지사	서영진 과장	053)741-5223
부산	부산울산지사	김윤태 과장	051)644-1401
경남	경남지사	문정호 사원	055)274-4813
제주	제주지사	김윤삼 과장	064)748-9472

<참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및 일본 채소류 ID 관련

- ☐ 수출협의회 구성·운영 품목('13. 2월 현재)
-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단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전통주, 막걸리, 유자차
- ☐ 일본 채소류ID품목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 ☐ 관련 문의처
- 품목별 수출협의회 사무국(품목별 수출협의회 가입문의)

품 목	사 무 국	담 당	연락처
파프리카/딸기	aT 농산수출팀	고혁성 차장	02-6300-1450
버섯	버섯수출협의회	동관우	063-533-8252
배/사과/단감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이경일	02-6300-8201
양란	aT 농산수출팀	장혜영 대리	02-6300-1446
김치	aT 식품수출팀	백유태 과장	02-6300-1377
인삼	(사)고려인삼연합회	고정화 대리	02-6300-2985~6
유자차	aT 식품수출팀	이승훈 차장	02-6300-1373
전통주/막걸리	aT 식품수출팀	윤진형 대리	02-6300-1379

- 일본채소류ID제도 관련
 - aT 수출지원팀 남상희 과장(02-6300-1353), 장동승(02-6300-1357)

②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개요	☞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수출선도조직 선정업체
지원품목	☞ 20품목 - (농산물) 파프리카, 여름딸기, 새송이버섯, 단감, 백합, 장미, 김치, 유자차, 팽이버섯,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겨울딸기, 사과, 밤 - (수산물) 김, 굴, 전복, 넙치
지원내용	☞ 농산물 - 수출선도조직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매년 100~150백만원/총사업비 80%이내)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차등지원 -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연합법인에 한함) ☞ 수산물 -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조직화·운영관리 - 조직당 10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추진절차	운영계획수립 (2월) ⇒ 모집공고 (3월) ⇒ 사업자 선정 (3월) ⇒ 사업추진 (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팀 : 석영지 과장(02-6300-1447), 오아름 사원(02-6300-1448) ☞ aT 수산임산물수출팀 : 조창식 대리(02-6300-1495)

③ 공동물류활성화 사업

개 요	☛ 해상운송 대상 공동물류를 담당할 물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물량 확보에 따른 수출 운송비 절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B/L상 화주업체) 및 물류업체
지원내용	☛ 운영노선 : 20개 노선(p) ☛ 지원내용 : 주요 해상항로별 공동물류를 담당할 물류 전문업체 선정, 물량 규모화에 따른 수출 운송비 절감 및 인센티브(THC*) 지원 * Terminal Handling Charge ☛ 지원방법 : '13.3월중 "수출업체 지원신청서"를 aT에 제출하여 사전 등록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2월) ⇒ 모집 및 선정(3월) ⇒ 사업집행 및 인센티브 지원 (3~11월)
이용방법	<pre> graph TD A[농식품부] -- "① 사업승인 요청" --> B[aT] B -- "② 사업승인" --> A B -- "③ 참가신청서제출" --> C[수출업체(화주)] C -- "④ 참가신청서제출" --> B B -- "④ 평가·선정" --> D[물류업체(포워더)] D -- "⑤ 참가신청서제출" --> B C -- "⑥ 참가승인" --> B B -- "⑦ 참가승인" --> C C -- "⑧ 서비스비용정산" --> D D -- "⑨ 서비스비용정산" --> C C -- "⑩ THC비용지급" --> B B -- "⑪ THC비용청구" --> C D -- "⑫ 운송내역제출" --> B B -- "⑬ 운송내역제출" --> D </pre>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5개 노선 지원('12년) * 부산-도쿄, 오사카, 시모노세키, 기룡, LA ☛ 계 획 : 20개 노선 지원('13년, 계획)
담당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도현미 사무관, 장미진 주무관(044-201-2173) ☛ aT 수출지원팀 : 박은정 과장(02-6300-1355)

④ 수출 농식품 인증 지원

개 요	☞ 특정 국가 수출시 필요한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인증제도	☞ 해외 각국에 농식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등록제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제도 * 러시아 고스트 인증, 할랄인증, 코셔인증, 인도네시아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미국 FDA 인증,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인증, Global GAP 등
지원내용	☞ 지원기준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범위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리인(대행사) 수수료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13 연중)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후 비용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13년 중 지원신청서 제출 건에 대해 인증 획득 완료 후 지원
이용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 승인 통보 받은 후 aT 지사로 해외 인증 획득 관련 증빙 제출
담당부서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이지재 차장(02-6300-1352), 홍장우 사원(02-6300-1358)

<참고>

주요 해외 인증제도 현황

가. 러시아 고스트(GOST-R) 인증

□ 제도개요

- 러시아 GOST-R 인증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규격인증시스템으로서, 러시아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표준, 규격 및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결과의 판정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상품이 동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증명하는 인증
 - 제품 또는 포장에 GOST-R 인증마크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어 동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인증관리 및 대행기관

- 관리기관 : 러시아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동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테스트센터에서 제품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동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결정
- 국내 대행기관
 - CRT Far East : (주)한국SGS와 러시아연방표준위원회의 합작법인으로서 대 러시아 수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해 GOST 규정에 따라 인증과 시험을 담당
 - 세르콘스 코리아(Sercons Korea)

□ 인증절차

- 세부절차 : 신청서 제출(수출업체) → 인증필요사항 통보(인증기관) → 검사기관에 제품샘플 및 기술자료 제출(수출업체) → 샘플테스트(검사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 → 인증마크 부착

- 제출서류 : GOST인증신청서, 품질증명서, 테스트용 샘플(제품별, 용량별 4개이상), 러시아어 라벨링, 위생검역증, 기타 검사기관 요청 자료
- 첨부서류 :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제조일/유통기간, 식물 위생검역증(식물성생산물)
- 소요기간 : 일반식품 1~2주, 건강식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1.5~4개월 (러시아내 테스트 필요)
- 인증비용 : 품목별 약 800천원
 - 러시아 위생증명서 비용(1년 유효) : 420천원
 - GOST 테스트(6개월 유효) : 250천원
 - GOST-R 인증서(매 선적시) : 120천원
 - * 상기 비용은 인증기간(1~3년)에 따라 상이함
 - * GOST 인증서는 품목별로 취득해야 하며 같은 식품의 경우 성분변경이 있을 시 하나의 인증서에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발급 가능

나.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 제도개요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을 의미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상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

☐ 보급현황

- 할랄식품의 시장규모는 '05년 5천 5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아시아 3,700억(중동 1,100억, 인도네시아 680억 등), 아프리카 920억, 유럽 770억, 북미 120억 등

-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 확대로 비무슬림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 것으로 나타남

□ 인증 취득절차

-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FM)의 할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해 전 세계 무슬림국가에서 인정되는 말레이시아 현지 할랄증명서 취득이 권고됨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

인증 절차	인증 로고와 인증서
Document Approval ↓ Premise Inspection/Audit ↓ Report Writing ↓ Panel Committee ↓ Issuance of Halal Certificate ↓ Monitoring and Enforcement	 

□ 해외 발급기관

국 가	발급기관
인도네시아	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
말레이시아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 소요비용 : (국내) 품목당 약 30만원, (해외) 품목당 약 30백만원

다. 코셔(Kosher) 인증

□ 제도개요

- ‘코셔(Kosher)’란 히브리어로 ‘적합한’ 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
 -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으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
- 코셔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이 코셔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제도

□ 보급현황

- 미국의 코셔 시장규모는 ‘07년 기준 2,5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코셔 식품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
 - 미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식료품의 40%가 코셔 인증마크를 부착

□ 인증 취득절차

- 인증기관 : 수백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중 OU마크가 전체 코셔제품의 70~80% 차지
 -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기업 OU마크 선택
-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육류) 등으로 구분
- 인증 절차 및 마크

인증 절차	인증 로고
신청서 제출 → 생산시설 검사(OU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	

-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정도 소요

□ 소요비용 : 품목당 연간 \$3,000 ~ \$5,000

⑤ 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개 요	☞ 해외 신규 시장 및 신규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수출시 소요되는 통관·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	☞ 농식품 수출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지원내용	☞ 바이어대상 샘플제공 통관·운송비의 70% 지원 (10box/회 이내,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 단,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 관련 증빙서류 지사 제출 ⇒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연중지원
이용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관련 증빙서류 지사 제출
담당부서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이지재 차장(02-6300-1352), 홍장우 사원(02-6300-1358)

⑥ 환변동보험 및 농축산물 수출보험

개 요	☞ 환율변동, 농산물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지원내용	<table><tr><td>지원항목</td><td>환변동보험료</td><td>단기수출보험</td></tr><tr><td>지원대상</td><td>일반형 및 범위제한 선물환 가입비</td><td>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td></tr><tr><td>지원비율</td><td colspan="2">가입보험료의 90%</td></tr><tr><td>지원한도</td><td colspan="2">10백만원 한도</td></tr></table>			지원항목	환변동보험료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일반형 및 범위제한 선물환 가입비	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한도	10백만원 한도	
	지원항목	환변동보험료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일반형 및 범위제한 선물환 가입비	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한도	10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추진절차	☞ 보험료 선급(매 분기) : 공사→무역보험공사(사업위탁체결) <table><tr><td>보험가입 (수출업체→보험공사)</td><td>⇒</td><td>지원대상확인 (보험공사→공사)</td><td>⇒</td><td>보험가입 및 자부담분(10%) 납부 (수출업체→보험공사)</td></tr></table>			보험가입 (수출업체→보험공사)	⇒	지원대상확인 (보험공사→공사)	⇒	보험가입 및 자부담분(10%) 납부 (수출업체→보험공사)							
보험가입 (수출업체→보험공사)	⇒	지원대상확인 (보험공사→공사)	⇒	보험가입 및 자부담분(10%) 납부 (수출업체→보험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공사-무역보험공사간 사업약정 체결완료 ☞ 계 획 :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연중지원														
이용방법	☞ 수출업체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공사로부터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 (자부담은 업체 납부)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정미영 사무관, 양호섭 주무관(044-201-2177) ☞ aT 수출지원팀 : 이지재 차장(02-6300-1352), 홍장우 사원(02-6300-1358)														

⑦-1 수출상품화 사업(농식품)

개 요	☞ 수출유망 고부가상품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			
지원품목	☞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 수출상담활동 / 해외마케팅			
	☞ 지원내용(농식품 기준)			
	구 분	유망상품개발	상품화 2단계	상품화 3단계
	지원한도	100백만원	40백만원	50백만원
	수출목표액	-	6만불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10만불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정 산 액	집행액의 50% (단, 대기업은 30%)	집행액의 80%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30%) : 수출실적, 성장성, 안전성, 활동성 - 공개발표평가(70%) : 업체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면접평가			
추진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사업 약정체결 (3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총 16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중 ☞ 계 획 : '13년 2월 신규업체 선정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global.a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 · 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업체PT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 aT 수출개발처 및 각 지사 수출담당 - 담당자명 : 이승훈 차장(02-6300-1373), 송다니엘 과장(02-6300-1375)			

⑦-2 수출상품화 사업(수.임산물)

개 요	☞ 수출유망 고부가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			
지원품목	☞ 수·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 수출상담활동 / 해외마케팅			
	☞ 지원내용 (수산)			
	구 분	유망상품개발	상품화 2단계	상품화 3단계
	지원한도	40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수출목표액	-	4만불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6만불 또는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정 산 액	집행액의 50% (단, 대기업은 30%)	집행액의 80%	
	(임산)			
	구 분	상품화 1단계 (시장개척)	상품화 2단계 (시장진입)	상품화 3단계 (시장정착)
	지원한도	21백만원	28백만원	28백만원
	수출목표액	-	4만불 또는 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6만불 또는전년실적×110% 중 높은 금액
	정 산 액	집행액의 70%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30%) : 수출실적, 성장성, 안전성, 활동성 - 공개발표평가(70%) : 업체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면접평가			
추진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사업 약정체결 (3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연속지원업체 총 11업체 선정(수산 8, 임산 3) ☞ 계 획 : '13년 2월 신규업체 선정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global.a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 · 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업체PT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			
담당부서	☞ aT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및 각 지사 수출담당 - 담당자명 : 송미정 과장(02-6300-1493), 윤내리 대리(02-6300-1496)			

<참고>

환변동보험 종류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 (보험금)지급하고, 환율상승 시 업체에서 환차익(환수금)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환율하락시 보장타월 하나,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부담
옵 션 형	범위제한선물환 (Collar)	일정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 - 보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50원, ±100원, ±200원 구간에서 환차익, 환손실 인정 ◦ 보험요율 : 1~3%로 수시변동

[범위제한선물환(Collar) 상품 안내]

- 일반 선물환 방식과 달리 보험금과 이익금이 최초 약정된 범위로 제한
 - 범위제한 금액 : ± 50원, ± 100원, ± 200원 상품 운용

【환차손 및 환차익 발생시 손익(-100원 ~ 보장환율 ~ +100원)】



- 헤지손익 마이너스(-)는 보험계약자가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환차익을 의미
- 환율이 큰 폭 상승하여도 보험계약자가 환입해야하는 금액은 달러당 50원, 100원, 200원으로 제한

<참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위험과 선택위험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수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 택 계 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발생 위험
책임금액	1억원~3억원	1백만원~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보상요건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
보상내용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거래	혼중 및 폐기 비용 보상	클레임 처리비용(조사, 소송 등)
계 약 액	천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
보험요율 무신용장	신용장거래 0.3% 무신용장 20%	4%	0.7%
보상거절	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		본지사간 수출거래, 법령 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 후 발생한 클레임
보상시기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보 상 액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소독 및 폐기 비용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 100%, 재수입 또는 전매 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차이점】

구 분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품 목		농수축임산물	제한 없음
우대내용	담보위험	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	-
	보험료율	결제방법 및 기간에 따라 단기수출 보험의 35%~55% 수준	-

<참고>

2013년 타기관 수출보험 지원 현황

구 분	서울시	경기도	무역협회
대상기간	○ '13. 1~12월 * 예산소진시 중단	○ '13. 1~12월 * 예산소진시 중단	○ '13. 1~12월 * 예산소진시 중단
지원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인 서울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경기도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백 만불 이하 무역협회 가입 중소기업
지원한도	○ 2백만원	○ 1백만원	○ 연간 1백 5십만원
지원비율	○ 100%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직접보증 70% - 수탁보증 63% ○ 기타 : 100% 지원	○ 100%
지원대상상품	○ 단기수출보험 ○ 중소기업Plus ⁺ ○ 수출신용보증(nego포함)	○ 단기수출보험 ○ 수출신용보증(nego포함) ○ 환변동(옵션프리미엄제외) ○ 농수산물보험 ○ 수출보증보험 ○ 신뢰성보험	○ 중소기업Plus ⁺

*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지사항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eic.or.kr/>)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서울지사	02 - 551 - 0481	부 산 지 사	051 - 245 - 3981	대구경북지사	053 - 252 - 4932
인천지사	032 - 422 - 2713	광주전남지사	062 - 226 - 4820	대전충남지사	042 - 526 - 3291
울산지사	052 - 261 - 1833	경 기 지 사	031 - 259 - 7600	경기북부지사	031 - 932 - 3501
강원지사	033 - 765 - 1060	충 북 지 사	043 - 236 - 1301	전 북 지 사	063 - 276 - 2361
경남지사	055 - 286 - 9397	제주사무소	064- 751 - 6601	본 사	02 - 399 - 6775

⑧ 국제박람회 참가

가. 종합박람회 참가

개요	☞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지원비율</th><th>지원한도</th><th>비고</th></tr><tr><td rowspan="2">○ 부스임차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td></tr><tr><td>대기업</td><td>70%</td></tr><tr><td>○ 장치비</td><td>전 업체</td><td>100%</td><td>1부스</td><td>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td></tr><tr><td>○ 기본비품임차비</td><td>전 업체</td><td>100%</td><td>1부스</td><td>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전기1kw</td></tr><tr><td>○ 운송통관비</td><td>전 업체</td><td>100%</td><td>200만원</td><td>신선농산물에 한함</td></tr></table>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고	○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대기업	70%	○ 장치비	전 업체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 기본비품임차비	전 업체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전기1kw	○ 운송통관비	전 업체	100%	200만원	신선농산물에 한함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고																												
○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대기업	70%																														
○ 장치비	전 업체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 기본비품임차비	전 업체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전기1kw																												
○ 운송통관비	전 업체	100%	200만원	신선농산물에 한함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 (2개월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총 23회 참가(종합박람회 13, 현지유망박람회 7, 벤더박람회 3) ☞ 계획 : '13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3월), '14년 참가계획 확정('13.10월)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3월, 10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내 국제 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 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 aT 해외마케팅팀(02-6300-1676) - 담당자 : 다음 페이지 *'13년 박람회 참가계획 내 담당자 참고*																															

<참고> '13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 분	참가기간	참가업체수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합 계	31회	803		(국번:6300)
<종합박람회 >	13회	438		
1. 두바이식품(Gulfood)	2.25-2.28	18	해외마케팅팀 성시찬 차장 선은경 사원 윤아진 사원	1676 1677 1678
2. 동경식품(Foodex Japan)	3.05-3.08	84		
3. 호치민식품박람회(FHV)	4.24-4.26	30		
4. 홍콩국제식품박람회(HOFEX)	5.07-5.10	48		
5. 방콕식품(Thaifex)	5.22-5.26	34		
6. 타이베이식품(Food Taipei)	6.26-6.29	36		
7. 뉴욕식품박람회(Fancy Food)	6.30-7.02	44		
8. 시드니식품(Fine Food Australia)	9.09-9.12	14		
9. 모스크바식품(WF Moscow)	9.16-9.19	20		
10. 인도식품박람회(World of Food)	9.23-9.25	16		
11. 퀴른식품박람회(ANUGA)	10.05-10.09	34		
12. 카자흐스탄식품	11.05-11.08	16		
13. 상해식품(FHC China)	11.14-11.16	44		
<현지유망박람회 >	7회	73		
1. 애너하임건강식품	3.08-3.10	10	LAAaT	
2. 중국성도당주교역회	3월 중	16	베이징aT	
3. 캐나다식품	4.30-5.02	9	뉴욕aT	
4. 브라질식품(APAS)	5.06-5.09	10	LAAaT	
5. 상해SIAL식품(SIAL China)	5.07-5.09	10	상하이aT	
6. 싱가포르식품	5.24-5.28	8	싱가포르aT	
7. 암스텔담식품	5.28-5.29	10	로테르담aT	
<벤더박람회 >	3회	35		
1. 고쿠부박람회	6월	9	도쿄aT	
2. 미츠비시식품박람회	7월	16	오사카aT	
3. 니폰악세스	2.8	10	오사카aT	
<아웃소싱 >	8회	97		
1. 독일식물원예박람회	1.22-25	15	성시찬 차장 선은경 사원	1676 1677
2. 호주 FARM WORLD	3.21-24	10		
3. 흑룡강성농기계박람회	8월	10		
4. 필리핀농업박람회	10.4-6	10		
5. 인도AGRIMACH박람회	12.5-7	10		
6. 중국식품소재박람회	3.26-28	4		
7. 일본식품소재박람회	5.15-17	12		
8. 아부다비식품박람회	11.24-26	12		
<개별참가박람회 >	연중	160	윤아진 사원	1678

나. 개별박람회 참가

개 요	☞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table><tr><th>구 분</th><th>5대 시장</th><th>동남아 시장</th><th>기타 시장</th></tr><tr><td>지원한도</td><td colspan="2">4,000천원 / 1회</td><td>8,000천원 / 1회</td></tr><tr><td>해당지역</td><td colspan="2">○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td><td>○ 5대 시장과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td></tr><tr><td rowspan="2">지원항목</td><td colspan="3">○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td></tr><tr><td>-</td><td colspan="2">○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td></tr></table>			구 분	5대 시장	동남아 시장	기타 시장	지원한도	4,000천원 / 1회		8,000천원 / 1회	해당지역	○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		○ 5대 시장과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	지원항목	○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	
구 분	5대 시장	동남아 시장	기타 시장																			
지원한도	4,000천원 / 1회		8,000천원 / 1회																			
해당지역	○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		○ 5대 시장과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																			
지원항목	○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																				
추진절차	<table><tr><td>모집공고 및 접수</td><td>⇒</td><td>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당년 1월 / 하반기 : 당년 4월)</td><td>⇒</td><td>박람회참가 (연중)</td><td>⇒</td><td>참가비지원 (30일 이내)</td></tr></table>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당년 1월 / 하반기 : 당년 4월)	⇒	박람회참가 (연중)	⇒	참가비지원 (30일 이내)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당년 1월 / 하반기 : 당년 4월)	⇒	박람회참가 (연중)	⇒	참가비지원 (30일 이내)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3월, 10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 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 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160회 ☞ 계획 : '13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3월), '14년 참가계획 확정('13.10월)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 aT 해외마케팅팀 : 윤아진 사원(02-6300-1678)																					

다. 국제수산물박람회 참가

개요	☞ 주요 국제수산물전문박람회별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고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장치비	전 업체	100%	1부스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기본비품임차비	전 업체	100%	1부스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
	○운송통관비	전 업체	70%	100만원	전시품에 한함
	○통역고용비	전 업체	50%	1명	업체당 1명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 (2개월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총 15회 참가(수산박람회 11, 로드쇼 1, 판촉전 3) ☞ 계획 : '13년 박람회참가업체 분기별 모집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4회(분기별) ☞ 참가신청 :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tfa.net) → 공지사항 → 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강경란 사무관, 배홍식 주무관(044-201-2179) ☞ 한국수산물무역협회 : 김효진 차장, 김종교 과장(02-6300-8901)				

<참고> '13년 국제수산물박람회 참가 계획

구 분	참가기간	참 가 업 체 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합 계	15회	153		
<종합박람회 >	11회	153	한국수산물무역협회 김효진 차장 김종교 과장	02)6300-8901
1. 보스톤수산물박람회	3.10-3.12	8		
2. 브뤼셀수산물박람회	4.23-4.25	8		
3. 방콕수산물박람회	5.22-5.26	6		
4. 호치민수산물박람회	6.25-6.27	6		
5. 도쿄수산물박람회	8.21-8.23	10		
6. 홍콩아시아수산물박람회	9.3-9.5	8		
7. 푸저우국제어업박람회	9.14-9.16	8		
8. 중국국제어업박람회	11.5-11.7	10		
9. 중국 애완동물박람회	11.15-11.18	14		
10.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	11.21-11.23	67		
11. 상하이국제어업박람회	12.6-12.8	8		
<로드쇼>	1회	-		
1. 타이베이 로드쇼	4.14-4.15	-		
<판촉전>	3회	-		
1. 홍콩 판촉전	8.15-8.19	-		
2. 미국 판촉전	10.11-10.13	-		
3. 홍콩 식품축제 판촉전	12.25-12.28	-		

⑨ 해외판촉행사 지원

개요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 (총 사업비의 80%, 단 대기업은 발생비용의 50% 지원) - 지원항목 : 입차비·장치비, 시식행사, 홍보활동(매체광고, 전단지, 이벤트), 입점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원분야</th><th rowspan="2">지원대상</th><th colspan="4">지원한도(백만원)</th></tr><tr><th>부류</th><th>종합</th><th>주력</th><th>신규</th></tr><tr><td rowspan="2">농산물</td><td>국내 공모</td><td>수출업체 및 관련협회</td><td>20</td><td>30</td><td>-</td><td>-</td></tr><tr><td>해외aT 공동기획</td><td>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td><td>40</td><td>100</td><td>-</td><td>-</td></tr><tr><td rowspan="2">수산물</td><td>국내공모</td><td>수출업체 및 관련협회</td><td>-</td><td>-</td><td>20</td><td>10</td></tr><tr><td>해외aT공동기획</td><td>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td><td>-</td><td>-</td><td>20</td><td>10</td></tr></table>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2배 이상액(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한도(백만원)				부류	종합	주력	신규	농산물	국내 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20	30	-	-	해외aT 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40	100	-	-	수산물	국내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	-	20	10	해외aT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	20	10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한도(백만원)																																
		부류	종합	주력		신규																																
농산물	국내 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20	30	-	-																																
	해외aT 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40	100	-	-																																
수산물	국내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	-	20	10																																
	해외aT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	20	10																																
지원절차	공고(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추진시) ⇒ 행사추진 (연중) ⇒ 결과보고 및 정산(연중)																																					
추진현황 및 계획	현 황 : '13년도 사업자 모집공고('13.1.28~2.21) 계 획 : 최종사업자 선정 통보(2월 말), 업체별 세부계획 보고 후 행사추진																																					
이용방법	모집시기 : 매년 1월 초(해외시장개척사업 통합공고)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 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선정심사기준('13년 기준) - 계량(50점) : 수출목표 및 직전년도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인증서 및 제품 홍보물 보유여부), 해외aT센터 관할여부 등 - 비계량(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선정 적정성, 바이어현황 등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적용																																					
담당부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강경란 사무관, 배홍식 주무관(044-201-2179) aT 해외마케팅팀 : 박수경 대리(02-6300-1674) aT 수산임산수출팀 : 조창식 대리(02-6300-1495)																																					

⑩ 해외바이어 거래알선(Buy Korean Food)

개 요	해외aT 추천 우수바이어 일괄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BKF)’ 개최로 수출거래알선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바이어가 상담을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															
지원내용	3박 4일 기준 바이어 항공료, 체재비 및 통역, 교통편의,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 견학 등 - 항공료 : Economy Class / 숙박비 (객실료 실비지원) * 수출상담회 : 업체당 40분 이내 1:1 해당바이어 상담(무료통역 제공) / 업체당 10개로 제한															
지원절차	해외바이어 추천 ⇒ 국내업체 신청 ⇒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															
이용방법	모집시기 : 4월 / 9월 참가신청 : 농식품전자상거래사이트(www.agrotrade.net) → 상담신청 → 희망바이어 및 상담품목 입력 선정심사기준 : 초청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수출확대 가능성, 바이어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현 황(2012년) <table><tr><th>구 분</th><th>실시일</th><th>초청 바이어</th><th>참가 수출업체</th><th>상담금액 (천불)</th></tr><tr><td>Buy Korean Food</td><td>5.8~5.9</td><td>95</td><td>172</td><td>45,000</td></tr><tr><td>Buy Korean Food Autumn</td><td>10.9~10.10</td><td>132</td><td>170</td><td>61,000</td></tr></table> 계 획 - Buy Korean Food 2013 개최('12.5월중) - Buy Korean Food 2013 Autumn 개최('12.10월)	구 분	실시일	초청 바이어	참가 수출업체	상담금액 (천불)	Buy Korean Food	5.8~5.9	95	172	45,000	Buy Korean Food Autumn	10.9~10.10	132	170	61,000
구 분	실시일	초청 바이어	참가 수출업체	상담금액 (천불)												
Buy Korean Food	5.8~5.9	95	172	45,000												
Buy Korean Food Autumn	10.9~10.10	132	170	61,000												
담당부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aT 해외관리팀 - 담당자 : 유정림 차장(02-6300-1682)															

⑪ 해외aT 지사화사업

개 요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에 대하여 해외 aT센터가 해외지사 역할대행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대상지역	 일본(도쿄·오사카), 중화권(상하이·베이징·칭다오·홍콩), 동남아(싱가포르, 방콕), 미국(뉴욕·LA), 네덜란드(로테르담) * 해외 aT센터별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동시지원은 2개소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지원서비스	세부 내역	비 고	사업비 사용처
	비즈니스 출장지원	○ 지원 횟수 : 2회 ○ 지원 항목 - 통역 및 교통(차량) - 회의실, 전화팩스	○ 1회는 1박2일 기준 ○ 지원지역 - 해외aT 소재도시 국한 * 관할지역내 기타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지원	○ 통역 및 차량 렌트 * 회의실 및 전화·팩스 이용은 해외aT 에서 제공
	맞춤형 바이어 알선	○ 연 4회	○ 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바이어 발굴 관련 업무협의비
	맞춤형 정보제공	○ 연 2회	○ 관할지역 및 해당업무에 국한	○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시장동향 정보 제공	○ 해외시장동향자료 월 1회	○ 해외aT가 매월 생성하는 시장동향 자료 제공	-
* 서비스이용료 : 1백만원 * 해외aT는 해외지사 역할 대행을 하고 관련 경비발생 시 업체 납부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 원칙(초과시 추가납부)				
지원절차	모집공고 (3월) ⇒ 심사/선정 (3월) ⇒ 약정체결 (4월) ⇒ 서비스 개시 (4월) ⇒ 사후관리 * 서비스 개시(시스템상) : 서비스요청(업체) → 요청사항 접수(해외aT) → 요청사항 처리 및 결과 입력(해외aT) → 업체 처리내용 확인(업체)			
이용방법	 모집시기 : 3월  참가신청 : 공사 홈페이지(at.or.kr) '고객지원사업'에서 신청  선정심사기준 : 수출실적, 수출준비현황(카탈로그, 포장표기 등),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			
추진현황 및 계획	 현황 : 2012년 지원업체 : 41개 업체  계획 : 2013년 지원목표 : 53개 업체			
담당부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aT 해외관리팀 - 담당자 : 유정림 차장(02-6300-1682)			

⑫ 글로벌 K-FOOD FAIR(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및 수출홍보)

개 요	☞ 해외 수출현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수출홍보를 종합한 글로벌 K-FOOD FAIR 개최로 수출상담 전개 및 우리 농수산물 수출홍보(신규사업)
지원대상	☞ 농수산물 수출업체 * 해외 수출현장으로 직접 출품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전개 및 수출홍보
지원내용	☞ 총 4회 개최 예정(중화권, ASEAN, 미주권 중에서 선정 중) ☞ 수출업체 기본 임차비·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 운송통관비(일부) 지원 * 세부지원기준은 업체 모집시 공고 ☞ 개최국 및 인근국가 바이어 항공료, 체재비 및 통역 등(1박 2일 기준) - 항공료 : Economy Class / 숙박비(객실료 실비지원) * 수출상담회 : 업체당 1:1 해당 바이어 상담(무료통역 제공)
지원절차	개최국가 최종선정 ⇒ 국내업체 신청 ⇒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주선'은 수출업체와 바이어 상담 매칭하여 탄력적 운용
이용방법	☞ 모집시기 : 개최시기 선정 중에 있으며 개최 4개월 전 모집 공고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추후 공고) ☞ 선정심사기준 : 국가별 수출확대 연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2013년 신규사업 - 해외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출상담회 개최로 수출연계 목표 ☞ 계 획 - 각 국가별 3~50개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개최국가 및 인근국가 바이어 초청 상담 개최(호텔 혹은 컨벤션센터 등) * 개최국가와 시기 확정 후 사업진행 예정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 aT 글로벌K-FOOD프로젝트 T/F - 담당자 : 장정호 차장(02-6300-1944)

⑬ 해외판촉행사 지원

개 요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 (총 사업비의 80%, 단 대기업은 발생비용의 50% 지원) - 지원항목 : 임차비·장치비, 시식행사, 홍보활동(매체광고, 전단지, 이벤트), 입점비						
	구 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한도(백만원)			
				부류	종합	주력	신규
	농산물	국내 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20	30	-	-
		해외aT 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40	100	-	-
	수산물	국내공모	수출업체 및 관련협회	-	-	20	10
해외aT공동기획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	20	10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2배 이상액(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							
지원절차	공고(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추진시) ⇒ 행사추진 (연중) ⇒ 결과보고 및 정산(연중)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13년도 사업자 모집공고('13.1.28~2.21) ☞ 계 획 : 최종사업자 선정 통보(2월 말), 업체별 세부계획 보고 후 행사추진						
이용방법	☞ 모집시기 : 매년 1월 초(해외시장개척사업 통합공고)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선정심사기준('13년 기준) - 계량(50점) : 수출목표 및 직전년도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인증서 및 제품 홍보물 보유여부), 해외aT센터 관할여부 등 - 비계량(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선정 적정성, 바이어현황 등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적용						
담당부서	☞ aT 해외마케팅팀 - 담당자 : 박수경 대리(02-6300-1674) ☞ aT 수산임산수출팀 - 담당자 : 조창식 대리(02-6300-1495)						

⑭ 개별 브랜드 지원사업

개요	☞ 대규모 수출 확대를 해외시장을 리드할 글로벌 농식품 스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개별 브랜드의 해외 홍보 마케팅 집중 지원으로 장기적 수출확대 발판 마련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분야별 확인필요)			
지원품목	☞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파워브랜드 / 상생브랜드 / 신선브랜드 ☞ 지원내용(농식품 기준)			
	구분	파워브랜드	상생브랜드	신선브랜드
	지원대상	최근('12) 수출실적 1백만불이상의 제품 브랜드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브랜드	과일, 채소, 화훼, 축산, 김치, 인삼 등 신선 브랜드 * 대기업 제외
	지원내용	목표국가 내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목표국가 내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목표국가내 브랜드 파워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및 브랜드 컨설팅 사업
	사업비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00백만원) * 단, 대기업은 30%이내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0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40백만원)
	사업량	3개 브랜드	3개 브랜드	2개 브랜드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면접심사(선정위원회) - 평가대상 : 업체별 목표 국 대상 브랜드마케팅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분야별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분야별 사업량이 미달될 경우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6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			
추진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사업 약정체결, 사전브랜드가치 조사(3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연중) ⇒ 사후브랜드가 치조사,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총 8개 업체 선정 예정 * 단, 분야별 미달 혹은 적정업체가 없을 경우 타분야 추가선정 가능 후 사업추진 중 - 2월 21일까지 신규업체 통합모집 중			
이용방법	☞ 모집공고 확인(global.a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업체PT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사전 브랜드가치 조사 후)			
담당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김기환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044-201-2175) ☞ aT 수출개발처 식품수출팀 - 하정아 과장(02-6300-1376), 윤진형 사원(02-6300-1379)			

⑮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공동물류센터)

개 요	해외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해외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 사업규모 : 국내외 60업체 내외 - 운영지역 : 8개국 14지역(해외 aT 소재지역) - 지원내용 : 냉장·냉동창고 보관료(80%) - 지원방법 :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2월) ⇒ 모집 및 선정(2월)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
이용방법	수출업체 ② 선적 → 위탁 물류업체 (창고) ④ 운송 → 유통업체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④ 물품인도 바이어 해외aT/수출협의회 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8개국 14개지역 40업체 지원('12년) - 계 획 : 8개국 14개지역 60업체('13년)
담당자	-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진흥팀 도현미 사무관, 장미진 주무관(044-201-2173) - aT 수출지원팀 - 담당자 : 박은정 과장(02-6300-1355)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기업 HRD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안내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우리 회사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싶은데..

Q 매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A -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회사라면 어디나 직업훈련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훈련비용, 무료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원제도 안내 참조)

Q 직업훈련을 시키면 우리 회사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까?

A - 직업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동기부여, 사기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의 73.5%가 훈련이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미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함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의 64.1%가 훈련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제고에 미친 효과가 높다고 평가함

-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12.2월, 고용노동부) -

Q 회사 경영도 어려운데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되지 않을까?

A -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실시한 직업훈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프로그램 등 우수한 훈련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 고가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회사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가 많은데 직업훈련도 중소기업을 우대하는제도가 있을까?

A - 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훈련비용을 100%까지 지원(대기업 80%,직종별 훈련단가 기준)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도 회사에서 낸 보험료의 240%(대기업 100%)까지 높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조직화사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 지원 중소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기타 산업 : 100명 이하
- ※ 상시근로자 기준

Q 직업훈련 기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A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 진행되는 집체훈련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우편훈련, 현장훈련, 야간훈련 등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한 유급휴가 비용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훈련시설·장비가 없는데 훈련실시가 가능할까?

A - 가능합니다. 회사에 훈련시설·장비가 없어도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고, 협력 대기업 등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훈련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업대학) 또한, 직접 훈련시설·장비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저리로 설치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직업훈련(훈련기관, 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 -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RD-net 을 통해 필요한 직업훈련정보(인근 훈련기관, 적합한 훈련과정)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가까운 지부·지사(3.붙임 참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우리 회사는 직업훈련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A - 있습니다. HRD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HRD 자문사업 (산업현장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HRD 전문지원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도 다양한 컨설팅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절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A - 어렵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주훈련 업무프로세스 대폭 간소화('12.10월)하였으며,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훈련실시에 따른 행정처리를 훈련기관에서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직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되면 대기업이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지 않나요?

A - 정부는 대기업의 우수인재 빼가기 등 불건전한 인력양성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숙련기술인력등의 수급계획, 능력개발, 경력관리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할 기준과 내용인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12.11.19)하여 적극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안내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 사업주 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인건비 등을 지원

※ 2013년도 3,452억원(3,300천명)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모두 가능 / 가입기간 중 상시 훈련비용 지원신청 가능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훈련실시	직종별 훈련단가에 따른 훈련비용의 100% (대기업 80%)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7일 이상(대기업 60일)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 (대기업 100%) * 훈련비는 집체훈련과 동일 기준
대체인력 인건비 (중소기업)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빈 자리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대체인력) * 훈련비 및 훈련생 인건비는 유급휴가훈련과 동일 기준
훈련 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000원, 기숙사비 1일 8,500원 한도

* 인터넷 및 우편훈련은 훈련비용 100%지원(대기업 80%)

** 현장훈련의 경우, 대기업은 집체훈련의 40%지원

▶ 지원한도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보험료의 240%까지 지원

※ 단 대기업은 100%까지 지원

▶ 지원절차



문의해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Tel. 02-3271-9374~5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자세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현황 및 연락처는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 HRD-net(www.hrd.go.kr)을 통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복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대)기업·사업주단체 등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훈련 인프라(시설·장비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 등) 및 훈련비를 지원

※ 2013년도 1,594억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협약가능기업) 및 시기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나 가능 / 연2회(1월, 7월) 공모로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과 협약기업간의 협약체결은 개별 실시

▶ 운영기관 유형

①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형

주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② 전략분야 인력양성형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③ 지역공동훈련형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 등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지원내용(협약기업의 혜택)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운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협약기업의 교육체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협약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 우수한 공동 교육훈련 환경 제공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첨단교육시설과 양질의 훈련과정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

• 비용 부담 없는 교육훈련시스템 제공

협약기업이 운영기관 교육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간편한 교육훈련 참여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협약체결만으로 원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협의체지원팀 Tel. 02-3271-9355~57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 현황 ('13. 1월 현재)

소재지	중소기업HRD형(지역공동형 포함)			전략분야 인력양성형
	기업형	사업주단체형	대학형	
계 (158)	41개 기관	27개 기관	58개 기관	32개 기관
서울 (38)	LG CNS, 코오롱 인더스트리, MDS테크놀로지, 파이크라상, 케이티디에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영화산업고용복지지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잡지협회	한성대학교, 명지전문대학, 건국대학교, 광운대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금형기술센터(사범)	한국콘텐츠진흥원, 복원생태학회,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폴리텍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D융합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RFID/USN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지원제도 안내

경기 (28)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기아자동차, SK텔레콤, 쌍용자동차, 불보건설기계코리아, 동원엔터프라이즈, LG전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 경기과학기술대학, 두원공과대학, 신흥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오산대학,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한국폴리텍Ⅱ 대학 화성캠퍼스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바이오협회, 한국 조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천 (7)	우진플라임, 한국남부발전, 대주중공업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지역공동형 운영기관)	인하대, 한국폴리텍Ⅱ 대학 남인천 · 인천캠퍼스	
강원 (3)			한국폴리텍Ⅲ 대학 춘천 · 강릉 · 원주 캠퍼스	
부산 (15)	한진중공업, 해영선박, 르노삼성자동차, 만디젤엔터보코리아, 현진소재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부산디자인센터	동명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 · 동부산캠퍼스	한국조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 (10)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SDI, 현대미포조선, 성진오텍,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산업기계, 다이이씨		한국폴리텍Ⅵ대학 울산캠퍼스	울산테크노파크
경남 (11)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창원대학교, 한국폴리텍Ⅵ대학 창원 · 진주캠퍼스 경남대학교	경남테크노파크
대구 (9)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달성 · 대구캠퍼스,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 (6)	포스코		금오공과대학교, 경일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 · 포항캠퍼스	
광주 (4)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한국폴리텍Ⅴ대학 광주캠퍼스	
전북 (4)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Ⅴ대학 익산 · 김제캠퍼스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남 (5)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주식회사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Ⅴ대학 목포 · 순천캠퍼스	
대전 (5)	KT		한국과학기술원(서울),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충청 (11)	네패스, 조광페인트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천안아산인력개발센터(지역공동형 운영기관)	주성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주 (1)			제주한라대학	
기타 (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 고졸근로자 등을 위한 '기업대학' 지원

▶ 기업대학 지원사업이란?

기업이 고졸 근로자, 협력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화된 교육훈련시스템인 기업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기업대학은 학위와는 무관함

▶ 지원취지

- 고졸 근로자 등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업 현장에서 배우고 익혀 현장중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고용 사회 구현
- 기업대학의 문호를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개방하여 실질적인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

▶ 지원대상(협약가능기업) 및 시기

-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나 가능 / 매월 심의(1회)를 통해 기업대학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과 협약기업간의 협약체결은 개별 실시

▶ 지원방식

- 지원유형

구 분	내 용
단독기업형 기업대학	고졸 자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대학
컨소시엄형 기업대학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인력양성을 위하여 협력사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기업대학

▶ 지원요건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사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위탁훈련 제외)

지원제도 안내

-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체계화된 훈련로드맵을 갖춘 고숙련 과정이어야 지원이 가능
 - * 채용예정자 과정은 연간 300시간, 재직자 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인프라 지원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비용(과정개발비, 운영인력 인건비, 시설·장비비) 지원
- 훈련비 지원
기업대학의 고숙련수준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실비수준에서 지원 (단, 대기업은 실제 훈련비의 100분의 80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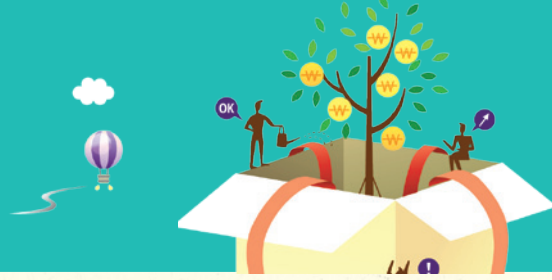
▶ 참여기업(협력 중소기업) 혜택

- 고숙련 훈련과정 제공
협력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 등이 운영하는 기업대학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고숙련의 핵심기술 및 역량을 제공받음
-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 제공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의 첨단 교육시설등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 제공
- 부담없이 교육훈련 참여
기업대학과의 협약체결만으로 원하는 교육훈련과정에 무료로 쉽게 참여할 수 있음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협의체지원팀 Tel. 02-3271-9355~57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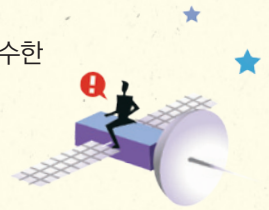


4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 및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수한
훈련과정을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

※ 2013년도 196억원(27천명)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및 일정 확인 후 수시 신청가능

※ 단, 훈련과정별 정원 충족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훈련과정 수강료 지원

▶ 지원한도

개인당 연 2회(비정규직 3회),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까지 참여가능
(단, 연 최대 50회)

▶ 지원 훈련분야(6개 영역)

- 사무분야 : 경영일반, 인적자원관리, 회계실무, 경력개발 · 리더십
- 기술분야 : 생산관리 · 품질관리, 기술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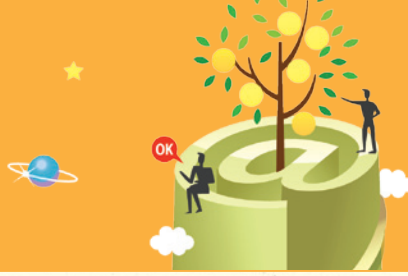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Tel. 02-3271-9367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지원제도 안내

·〈참고〉 영역별 훈련과정 예시 (2013년 훈련과정 중 일부)

1.경영일반	영업 Tool Kit을 활용한 영업력 향상 -청산유수 세일즈-
	[DIY(Design & Implement Your) Marketing] 중소기업 마케팅 문제유형별 맞춤형 멘토링
	9가지 사례로 배우는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수립 과정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극복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브랜드마케팅전략과정
2. 인적자원관리	국내외 트렌드 분석을 통한 신사업/기존사업reform 기획
	컨설팅 BASE 중소기업형 신인사제도 구축클리닉
	잘되는 회사의 14가지 인사노무비법 과정
	신바람 중소기업 조직 성과관리 실무 과정
3. 회계실무	교육과 컨설팅을 동시에!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리스크 완전정복
	효율적 성과관리체계를 위한 중소기업형 KPI 지표 도출 과정
	Core-Point 종합 세무관리 전문가 과정
	불황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관리 실무
4.경력개발/리더십	중소기업 해외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마스터
	중소기업 세무 RISK 관리를 위한 SMART 법인세 관리 실무
	중소기업 기업결산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조직활성화를 위한 멀티프레임 리더십
5.생산관리 품질관리	조직몰입을 위한 중소기업 리더의 강점기반(AI) 경력개발노하우
	생산현장의 변화혁신을 주도하는 핵심리더 양성과정
	중소기업 현장관리자의 업무성과를 3배로 높여주는 TA 新소통 기술
	현장에서 바로 성과를 창출하는 참여적 리더십
6.기술경영	중소기업 DB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중소기업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및 암호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가상화 운영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가지 현장밀착형 장애 해결 프로젝트
	체험! Business와 IT의 Align 역량 진단 및 전략적 IT Solution 도출 프로젝트
	중소기업 돈 버는 공장관리 전문가
	3현 진단(현장, 현물, 현실)과 개선으로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현장개선 즉실천 및 My Job Idea 즉창출 과정
	Virtual-3D 시뮬레이션 TOOL을 활용한 공정구조개선 6대 기법의 자사적용 계획수립 과정
	Project 개발자를 위한 Process Management Technique
	Skill Up! 중소 SW기업 공공사업 수주율 향상을 위한 제안 성공사례 분석및 전략적 제안
	제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설계/개발의 VEST기법 9-Method Approach 과정
	특허전쟁시대의 제품설계 전문가 필수요식! 기술개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Triz 적용 과정



5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사업이란?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사업

※ 2013년도 62억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연초 공모를 통해 선정(2~3월), 관할 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접수

▶ 지원내용

① 대부대상

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신·증축에 따른 건축공사비 또는 건물구입비

※ 건설임대비, 토지매입비, 준공허가로 사용 승인되었거나 가압류 설정된 건물구입비는 제외

훈련장비 : 직업능력개발장비 구입비

※ 기 납품 장비 또는 중고장비, 공기구성 장비 등은 제외

② 대부금액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 이내

※ 대부한도: 연간 20억원 이내, 이전연도 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잔액을 포함하여 총60억원 이내

③ 상환방법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분기상환

이자 : 최초 대부일로부터 상환기간까지 분기상환



지원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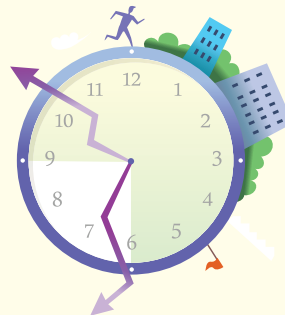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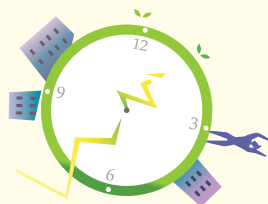
④ 대부금리 및 기간

대상	대부금리	대부기간
중소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1%	시설 : 10년 (5년 거치, 5년 상환) ※시설 + 장비: 10년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10년 이내이며, 거치가간은 내용연수의 1/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1%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2.5%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4%	
근로자 단체	4%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Tel.02-3271-9361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 활동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

※ 2013년도 51억원(240개 기업)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나 가능 / 연초 공모를 통해 선정(1~2월), 관할 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접수

▶ 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1년(1회)에서 최대 3년(3회)까지 지원(다만, 외부전문가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

② 유형별 지원내용

학습조 활동지원 등 4개 유형

학습조 활동	우수학습 활동
학습조 활동 운영비/기업당 3,000만원 한도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학습리더수당에 한해 30% 기업부담 필수)	우수활동경진대회/기업당 800만원 한도 (단, 우수기업 1,000만원 한도) ※ 총 소요비용의 70%지원(30% 기업부담 필수)
학습네트워크 지원	외부전문가 지원
학습네트워크 운영비/기업당 100만원 한도	학습조직화 코칭, 컨설팅 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 ※ 총 소요비용의 70%지원 (30% 기업부담 필수)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Tel. 02-3271-9369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7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사업이란?

현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에 관련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2013년도 28억원(400개 기업)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나 가능 / 연초 공모를 통해 선정(1~2월), 관할 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접수

▶ 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② 지원사항



구분	지원방식	항목별 지원한도	총 지원한도
교육	교육과정 제공, 교육비 및 임금지원	200만원	700만원 (우수기업 900만원)
직무분석 및 훈련모듈개발	수당, 임금, 인채비, 교재구입비 지원	300만원 (우수기업 500만원)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수당 및 임금 지원	300만원 (우수기업 400만원)	
외부전문가 자문	자문료 지원	200만원	

※ 인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는정부지원금의 20% 이상을 기업이 부담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Tel. 02-3271-9373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8 중소기업 HRD 자문 지원(산업현장교수단)

▶ 중소기업 HRD 자문 지원 사업이란?

산업현장의 최고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2013년도 16억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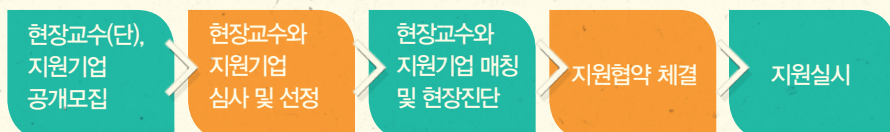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나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로 수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업현장 교수* 직접 기업을 방문, HRD 진단 및 경영·기술 지원 실시
※ 대한민국 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숙련기술자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 특화사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학습조직화 사업 등)의 훈련프로그램 등을 해당기업에 맞게 설계·지원
 - 경영지원: 경영시스템 등 인적자원관리
 - 능력향상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 현장훈련, 학습조직 등

▶ 지원방법

-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지원
 - HRD 종합서비스(학습조직화, 직무능력향상 등) 요청기업 공모(수시) 및 선정
 - 산업현장교수단 파견 및 지원
- 지원절차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현장교수지원단Tel. 02-3271-9209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9 HRD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프로그램

▶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이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체계가 우수한 기업을 HRD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인증을 수여하는 사업

※ 2013년도 7억6천만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연초 공모를 통해 선정(1~3월), 관할 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접수

▶ 지원내용

① 심사영역

부 문	영 역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체계 / 배치 및 이동 / 성과관리/ 승진 및 보상
인적자원개발	기획 및 인프라 / 운영 / 평가

② 인증혜택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4개 정부부처 공동명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 인증수여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담당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③ 인증취득 기준 미달기업에 대한 HRD 컨설팅 지원 (기업당 1,500만원)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Tel. 02-3271-9373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10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역량강화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란?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능력개발 지원제도와 최신경향, 지역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

※ 2013년도 4억원 지원 계획

▶ 지원대상 및 시기

중소기업의 CEO 및 HRD 담당자 / 연중 1~2회 참여 접수,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신청

▶ 지원내용

• 참가자 특전

교육비 전액무료, 식사제공, HRD자료 제공

• 교육내용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방안, HRD전략,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프로세스 수립전략, HRD트렌드 및 이슈, HRD 우수사례 등



문의주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Tel.02-3271-9369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HRD 종합지원팀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업 HRD문화

▶ 목적

건전한 기술인력 양성 생태계는 근로자의 숙련형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내의 효율적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토대이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은 숙련기술인력의 수급계획, 능력개발, 경력관리, 퇴·이직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로 대·중소기업이 준수하고 협력해야할 내용과 숙련기술인력 이동시 중소기업의 숙련 유지·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육성한 숙련기술인력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근로자의 직업경쟁력을 높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력 이동시 합리적 관행과 공정한 규범을 확산시켜 대·중소기업간에는 동반성장을, 기업과 근로자간에는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 숙련기술인력 수급계획

대·중소기업은 장·단기 숙련기술인력 수급을 포함한 인력수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한다. 대기업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수급에 대한 내용을 인력수급계획에 포함한다.

대·중소기업은 인력수급계획 수립시 경영전략과 함께 인력 수요와 노동공급 상황을 분석하고 숙련기술인력의 채용과 능력개발, 경력 관리, 퇴·전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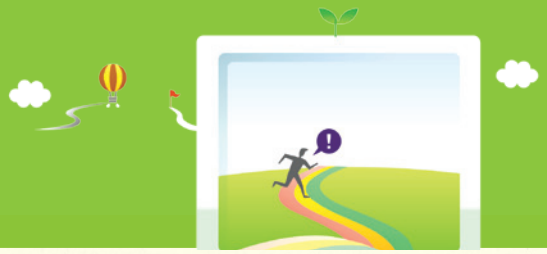
▶ 숙련기술인력의 능력개발 지원

- 대·중소기업은 특성화고, 대학 등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업 현장체험, 장기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예비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 대·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대기업은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에 특화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등으로 근로자가 숙련형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기업은 고숙련 훈련체계인 '기업대학'의 설치·운영,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육성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이에 적극 참여한다.
- 중소기업은 자체 교육훈련체계 마련 등 숙련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숙련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이력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 대·중소기업은 근로자가 다양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휴가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등을 활성화한다.
- 사업주단체 및 업종별협회 등은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확산될 수있도록 숙련기술인력 수요발굴과 '협력적 숙련기술인력 육성 모델'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

▶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대우 및 경력관리

- 대·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이 보수, 승진, 보직관리등에 있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 중소기업은 기업의 발전가능성과 근로자의 경력경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등 숙련기술인력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숙련기술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우리사주 배정 우대, 스톡옵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숙련기술인력의 이동

- 대·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등 체계적인 퇴직 및 이·전직 지원계획을 마련·시행한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협의, 중소기업의 숙련 유지·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협력·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육성
 - 고숙련 훈련체계인 '기업대학'의 설치·운영,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체계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사외 파견
 - 중소기업과 위·수탁 계약 체결시 숙련기술인력 양성비용 반영
 -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숙련형성·유지 기여분 지원, 다만, 구체적인 대상,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지원방법, 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숙련형성·유지 기여분을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 사업주단체 및 업종별협회 등은 숙련기술인력의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간의 분쟁 예방, 숙련형성·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 등 업계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및 협약 체결 등을 위해 노력한다.

Separate attachment

별첨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본부 및 지사 현황(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 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02-3271-9371~3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본관 4층
서울지역본부	02-3274-9680~4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동부지사	02-2024-1750~7	서울 광진구 독성로32길 38
서울남부지사	02-6907-7161~7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강원지사	033-248-8502,8503, 8506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강릉지사	033-650-5720, 5723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경인지역본부	032-820-8641~7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기지사	031-249-1231~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북부지사	031-850-9112, 9114~6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성남지사	031-750-6261~4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부산지역본부	051-330-1821~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부산남부지사	051-620-1971, 1934, 1933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
경남지사	055-212-7250~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울산지사	052-220-3250~4	울산광역시 남구 반영로 173
대구지역본부	053-580-2341~7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경북지사	054-840-3020~3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포항지사	054-251-8514~6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광주지역본부	062-970-178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전북지사	063-210-9203~5, 9211, 921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전남지사	061-720-8550~2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목포지사	061-288-3311, 3314~5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제주지사	064-729-0723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제주시 도남동 669-2)
대전지역본부	042-580-9120~1 9115, 9118~9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충북지사	043-279-902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충남지사	041-620-7651~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대표전화 Tel. 1899-4001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연계 사업)

농공상융합형 활성화 자금 신규 지원사업

① 농협하나로마트 테스트판매 및 신규계약지원

개요	제품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 농협하나로마트의 테스트판매와 신규계약조건에 맞도록 전문컨설팅 및 공장실태조사 비용 지원 * 현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업체 중 삼해상사(주) 등 14개 업체가 하나로마트와 거래
지원대상	농식품부·중기청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업체당 컨설팅비 및 공장실태조사비용(50만원)
예산규모	'13년 : 80백만원
추진절차	①기업평가(생략) ⇒ ②인터넷 신청 ⇒ ③바이어 신청내용검토 및 회신 ⇒ ④담당 바이어 상담 ⇒ ⑤공장실태조사 ⇒ ⑥상품개발협의회 ⇒ ⑦테스트 판매실시 ⇒ ⑧계약조건 시담 ⇒ ⑨본계약체결
신청방법	http://mart.nonghyup.com 홈페이지
추진일정	'13. 4월 부터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김호관 사무관(044-201-2122) 농협중앙회 마트지원부(02-2080-6724)

② KFS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개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제품 홍보 등을 위한 부스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부·중기청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관 설치 : 30개부스(270㎡) * 부스설치비 3백만원/업체당
예산규모	'13년 : 90백만원
추진일정	전시 및 컨퍼런스 참가업체 모집(3월~4월), 전시회(5.14~17)
담당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김호관 사무관(044-201-2122) aT 기업지원센터(02-6300-1734)

③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해외기술로드쇼 참가

개 요	☞ 국제 유명 농식품 전시회와 기술로드쇼 참가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부·중기청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분야	☞ 태국 원예 특산작물 박람회(Horti Asia 2013) - 방콕국제무역전시관(BITEC) ☞ 하얼빈 국제 농식품 경제무역상담 & 전시회 - 중국 하얼빈시 국제회의전람 ☞ 일본 농식품 기술로드쇼 - 제23회 서일본 식품산업 창조전 ☞ 한-베트남 농식품 기술로드쇼(VietSF Show 2013) - 호치민시 무역전시관(SECC)
지원내용	☞ 전시장 부스비, 기술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및 전시물류비, 통역비, 항공료 지원
예산규모	☞ '13년 : 130백만원
추진일정	☞ 태국 원예 특산작물 박람회(Horti Asia 2013) : '13. 5.9~11 ☞ 하얼빈 국제 농식품 경제무역상담 & 전시회 : '13. 6.15~19 ☞ 일본 농식품 기술로드쇼 : 5.15~17 ☞ 한-베트남 농식품 기술로드쇼(VietSF Show 2013) : '13. 10.31.~11.2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김호관 사무관(044-201-212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외기술협력팀(031-8012-7190)

I

기본방향 및 추진배경

【 기본 방향 】

○ 기술기반 농산업체의 해외지원을 위한 전략네트워크 구축

- * 민관 협력의 유기적 협력체계 및 해외 전문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양국 간 기술교류 및 프로젝트 추진

○ 실질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로드쇼 개최

- * 희망기술 수요조사 및 기관 간 사전상담회 등을 통하여 단순하고 일회적인 기술/제품 수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합작투자, M&A를 유도

□ 추진 배경

- 지난 3년 동안 재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확산 노력으로 우수한 기술이전 농산업체가 다수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시장 개척 및 기술사업화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업체의 세계무대 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이전 농산업체 해외진출지원은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Technology Push(기술로드쇼 및 유통시장 입점) 중심의 전략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수요자 중심의 국외 Market Pull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협력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재단은 해외 협력거점을 확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농산업체 등에 대한 패키지형 국외 진출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중 국) 국가 다양성 (영토, 기후,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거점을 분권화하고 '국가급 기술이전 시범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식량작물, 허룽강)
 - (베트남) RTTC 상시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농식품 기술 확산을 주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유통시장 및 한류 선점을 위하여 식품·바이오 제품군을 공략
 - (태 국) 전통적·전략적으로 농업과 관광을 국가산업의 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래 원예·특산작물의 세계적 유통 메카로 떠오르고 있어 신규진입을 추진

□ 추진 목적

- 국외 기술사업화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기술로드쇼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한 기술기반 농산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농산업체 수익성장

□ 추진 전략

- 국제 메이저 농식품 기술전시회와 기술로드쇼를 연계하여
 - (전시회) 국내 우수R&D성과, 기술제품 및 실용화재단 홍보
 - (기술로드쇼) 기술설명회, 기술매칭 상담회, 계약 및 협상지원
 ⇒ 수요기술·공급기업 발굴매칭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 전문성과 사업 집중성을 강화



전시회 및 기술로드쇼를 융합한 해외기술중개행사

- 국내 협력네트워크와 해외협력네트워크를 연계하여
 - (국 내) 한국발명진흥회, 통상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 외) 베트남 기술거래소(RTTC) 등 국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 글로벌 성과확산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생태계) 마련
- 2013 국제 농공상 융합 EXPO, 코디네이터 사업 등 재단 해외사업과 연계하여
 - (Pre Marketing) 엑스포 등 우수기술 홍보 및 해외 바이어 초청
 - (사후 관리) 기술 컨설팅, 기업 간 제품협약, 기술협력 등의 허브 활용
 ⇒ 글로벌 기술이전 사업화 확산을 위한 기술협력 교두보를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3 해외 농식품 기술로드쇼
「Korea Agro-Food Technology Road Show 2013」
- 기간 및 장소
 - 태국 원예·특산작물 기술로드쇼 (방콕, 5.9~11)
 - 일본 농식품 기술로드쇼 (후쿠오카, 5.15~17)
 - 중국 식량작물 기술로드쇼 (하얼빈, 9.10~13)
 - 베트남 기술로드쇼 (호치민, 10.31~11.2)
- 주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외기술협력팀
- 협력기관 :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발명진흥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세부 추진계획 (총 4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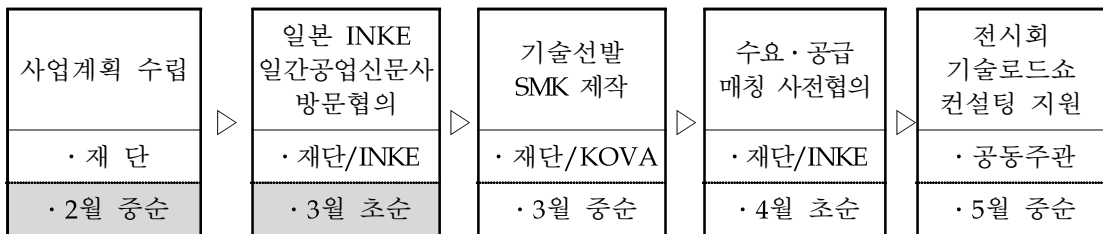
1. 태국 원예·특산작물 기술로드쇼

- 기간 및 장소 : 2013. 5.9~11, 방콕 국제무역전시관(BITEC)
- 참가 전시회 : Horti Asia 2013 (원예·특산작물 박람회)
- 전시 및 로드쇼 품목 : 종자, 종묘, 화훼, 온실, 자재 등 원예 기술
- 해외 협력거점 : Horticultural Science Society of Thailand
- 국내 협력 : 종자 및 특용작물원예협회,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등
- 주요 사업
 - 전시회(20부스내외, 10개 내외 농산업체 참가지원), 기술로드쇼 및 매칭상담
 - 협력네트워크(MOU) 체결, 기술수요 및 매칭기업 발굴 등
 - 한-태국 원예·특산작물 기술거래 심포지엄 개최(네트워킹 및 신규사업 발굴)
- 추진 일정



2. 일본 농식품 기술로드쇼

- 기간 및 장소 : 2013. 5.15~17, 후쿠오카 마린메세전시센터
- 참가 전시회 : 제23회 서일본 식품산업 창조전
- 전시 및 로드쇼 품목 : 건강식품, 가공음료, 가공식품 등 농식품 분야
- 협력거점 : 일간공업신문사, INKE 후쿠오카
- 국내협력 : 한국벤처기업협회(KOVA), 테크노파크 등
- 주요 사업
 - 전시회(20부스내외, 10개 내외 농산업체 참가지원), 기술로드쇼 및 매칭상담
 - 협력네트워크(MOU) 체결, 기술수요 및 매칭기업 발굴 등
 - '일본 FACT 농업기술 전시관'연계 기술상담회 추진(기술이전 및 신규사업 발굴)
-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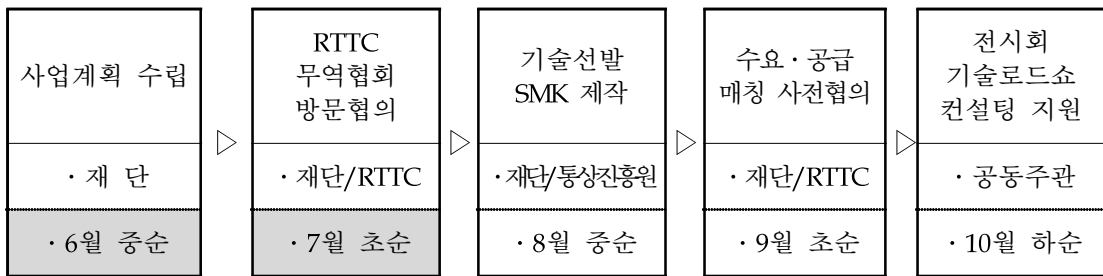
3. 중국 식량작물 기술로드쇼

- 기간 및 장소 : 2013. 9.9~13, 하얼빈 국제회의센터
- 참가 전시회 : 2013 哈尔滨农业博览交易会 (2013 하얼빈 농업박람회교역회)
- 전시 및 로드쇼 품목 : 곡물, 사료, 축산 농기계 등 현대화, 규모화 농업
- 협력거점 : 哈尔滨市农业委员会 (하얼빈시 농업위원회)
- 국내협력 : 경기도원, 충청도원, 경남도원 등 지자체 및 농산업 진흥재단
- 주요 사업
 - 전시회(20부스내외, 10개 내외 농산업체 참가지원), 기술로드쇼 및 매칭상담
 - 협력네트워크(MOU) 체결, 기술수요 및 매칭기업 발굴 등
 - 한-중 농산업 기술거래 심포지엄 개최(네트워킹 및 신규사업 발굴)
- 추진 일정



4. 베트남 농식품 기술로드쇼

- 기간 및 장소 : 2013. 10.31~11.2, 호치민시 무역전시관(SECC)
- 참가 전시회 : VietSF Show 2013 (한국무역협회 주관 기술제품 런칭쇼)
- 전시 및 로드쇼 품목 : 건강식품, 화장품 등 식품·바이오 제품 중심
- 협력거점 : 베트남 기술거래소(RTTC), 베트남 과학기술부(VHS&T)
- 국내협력 : 한국무역협회, 발명진흥회, 통상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 주요 사업
 - 전시회(20부스내외, 10개 내외 농산업체 참가지원), 기술로드쇼 및 매칭상담
 - 협력네트워크(MOU) 체결, 기술수요 및 매칭기업 발굴 등
 - 한-베트남 기술수요발굴을 위한 기관상담회 개최(네트워킹 및 신규사업 발굴)
- 추진 일정



IV

추진절차 및 단계별 세부사항

· 추진 절차

해외 협력기관 사전협의



국내 Pre-Marketing



국외 Pre-Marketing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기술로드쇼 개최



사후 관리

· 세부 사항

○ 기술협력 거점국 전문기관 발굴 및 네트워킹

- 공동협력기관 방문협의 및 Benchmarking
- 공동 기술수요 조사 및 Market Pull Search
- 참가 전시회 및 기술로드쇼 구성 등 협의

○ 세부기술 분야 선정 및 기업 발굴

- 공급기술/기업 모집
: 설명회추진(농공상융합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
: 국내 협력네트워크 공동 추진, 수요기술 매칭
- 모집군 중 국내 전문가 회의를 통한 1차 선정
: 해외 협력의지, 기술성(특허확보), 시장성 등

○ 기술로드쇼 참가기업/기술의 해외 마케팅

- 해외협력기관의 BBS(Bulletin Board Service)활용
: 참가기업 정보 및 기술프로파일 업로드, 관심유도
- 국외매칭 예비기업 및 해외협력기관 사전면담을 통한 로드쇼 참가기업 확정(성과창출 최우선)
- 1차 상담요청 기업들에 로드쇼 현장상담 예약

○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 SMK 및 상담자료 제작 및 번역 등

○ 사전상담 및 홍보 추진

- BBS 등 거점국 파트너를 통한 현지 홍보
- 유무선 2차 상담을 통한 현장심층상담 추진

○ 전문전시회 참가 및 매칭 상담회 실시

- 대상 국가별 타겟 품목 전시회에 전략적 참가
- 오 전 : 기술시장 세미나 및 참가기업 설명회
- 오 후 : 기술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상담회
※ (예 시) '한-유럽 농업기술거래 세미나 및 상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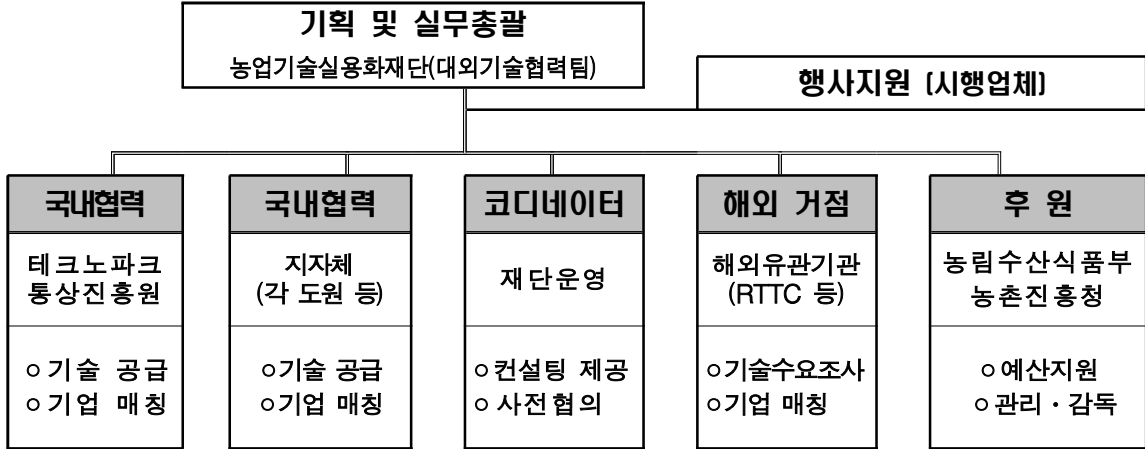
○ 기업 간 업무협약, 수출계약 등에 대한 사후지원

- 기업 간 업무협약 지원(NDA, LOI, MOU 등)
- 기술협력 계약지원(특허, 기술도입 자금지원 연계 등)

V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추진 체계



추진일정(예정)

추진 과제	세부 일정											
	'1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013년도 계획수립	■											
• 태국 기술로드쇼	■	■	■	■								
• 상반기 사업보고					■							
• 중국 기술로드쇼					■	■	■	■				
• 베트남 기술로드쇼						■	■	■	■	■		
• 하반기 사업보고											■	
• 사후 관리				■	■	■	■	■	■	■	■	■

□ 소요 예산

- 전시참가(행사장 임차, 부스설치 및 기본가구 임대, 물류 및 통관 등)
- 기술마케팅(통역 및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섭외, SMK 제작 및 번역 등)
- 농산업체 숙박 및 항공료 지원(해외기술로드쇼 농산업체 지원규정, 첨부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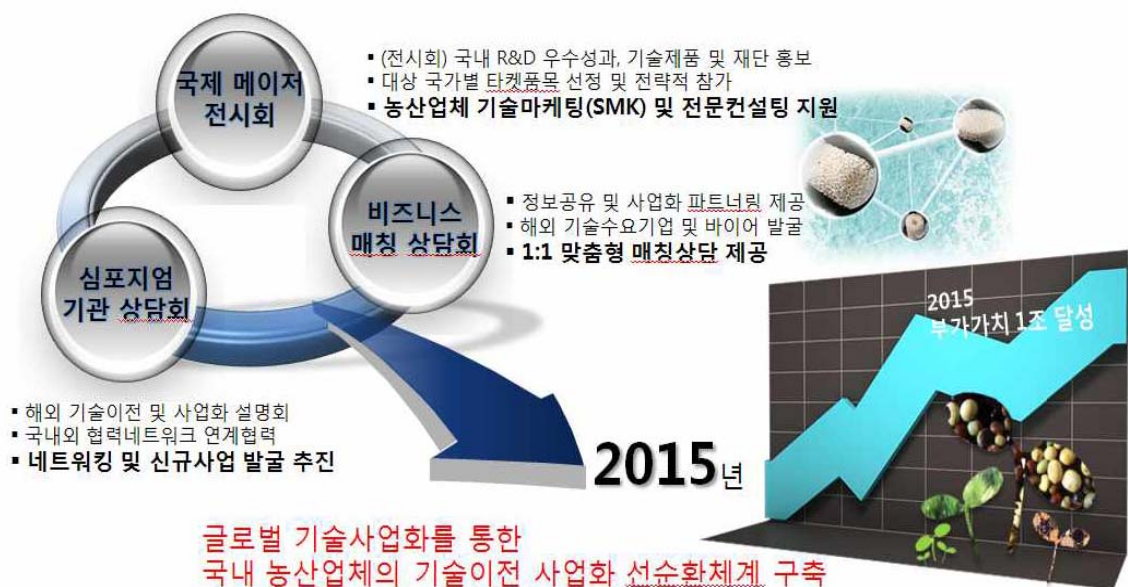
※ 비 목

- 재단-우수농업기술 및 품종 해외사업화-행사비-행사비
- 농식품부-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해외기술로드쇼 참가비지원

□ 기대 효과

- 국외 기술이전 및 상품수출을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 협력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통한 국내 농산업체의 기술이전 사업화 선순환체계 구축
- 국내 우수농업기술 홍보 및 제품수출을 통한 국가 글로벌 위상 제고

2013 해외 농식품 기술로드쇼



[첨부 1]

2013 해외 기술로드쇼 농산업체 지원규정

□ 지원 목적

- 맞춤형 기술로드쇼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한 농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지난 3년 동안 재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확산 노력으로 우수한 기술이전 농산업체가 다수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시장 개척 및 기술사업화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업체의 세계무대 진입을 지원

□ 지원구분 및 비율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 부담금
전시 참가	· 행사장 임차 (공동 국가관 운영)	100%	0%
	· 부스설치 및 기본가구 임대	100%	0%
	· 물류비 (1cbm * 2개, 왕복기준)	100%	초과분
기술마케팅	· 통역비 (업체 당 1일 1인)	100%	0%
	· 바이어 매칭 및 섭외	100%	0%
	· SMK 제작 및 번역	100%	0%
국외여비	· 숙박비 (4성급이하, 2인1실, 실비기준)	50%	50%
	· 항공료 (이코노미석, 왕복, 실비기준)	50%	50%

* 해외 기술로드쇼 농산업체 지원금은 용역 수행업체 혹은 여행사를 통하여 일괄지원

□ 중소기업청 연계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개 요	☞ 지역기반의 특화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공상 융합형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60% 이내, 6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 R&D 성공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보, 중진공의 사업화 보증 및 정책 자금(시설/운전자금) 연계 지원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R&D 과제 평가시 가점(2점)부여
예산규모	☞ 116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5)

② 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개 요	☞ R&D역량이 취약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향상, 생산성제고 및 생산비용절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이내 지원
예산규모	☞ 400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236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선택 집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76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월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2월	2~3월	4~6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575	2년	6	60%	2월 6월	3~4월 7~8월	4~5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180	2년	6	60%	4월	5~6월	7~8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619	2년	5	75%	2월	3~9월	4~10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저 변 확 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117	1년	2	90%	'12.12월	매월 1~10일 (1~7월)	1~8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96	1년	1	90%	3월	4월	6월
	산업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390	1년	1	50% (지자체 25%)	'12.12월	매월 1~10일 (1~9월)	1~10월
		도약기술개발	944	1년	1	75%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400	9월	0.5	75%	'12.12월	매월 1~10일 (1~9월)	1~10월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인 표 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0.22	75%	1~5월	2~6월	3~8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84	1년	0.5	70%	1월	1~12월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50	2년	0.24	50%	3월	3~4월 6~7월	5월 8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20	6월	-	100%	3월	3~4월 6~7월	5월 8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15	1년	0.2	75%	3월	4~5월	6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2.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다만,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이동 음식점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93	치킨 전문점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댄블링 및 배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등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3. 신청방법

- 선택과 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단,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 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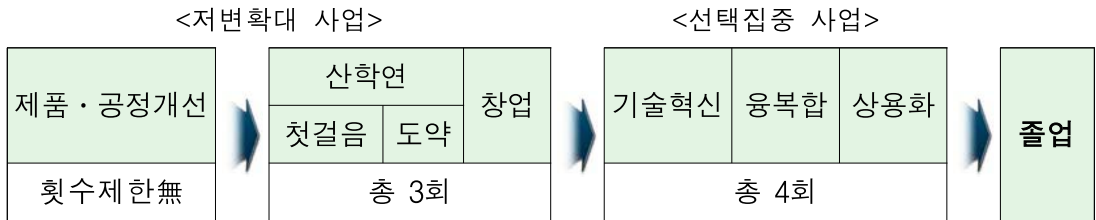
8. 기타 공지사항

-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다만, 건강진단 연계형 R&D 사업(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제품·공정개선)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 ㉡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 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2)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 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붙임 1.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1부.
2.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1부. 끝.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I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첨단기술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 2,197억원(신규 1,154억, 계속 1,043억원)

■ 지원내용

- ① 글로벌전략기술개발(306억원) :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 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 발굴·지원
 - 투자연계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 지원
- ② 혁신기업기술개발(848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의 녹색성장, 제조 기반, 첨단기술 등 미래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유의사항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이내	지정공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1차·2차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기술개발	2월	2~3월	4~5월	5~6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차	1월	1~2월	3~4월
	2차	6월	6~7월	8~9월
				5~6월
				10~11월

2.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155억원(신규)

■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105억원) :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有形)
- 지식서비스(50억원)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과제(無形)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관련 사행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복권류, 체육진흥투표권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자유응모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예선심사	과제기획	본선심사	협약체결
기업서비스연구개발	2월	2~3월	3월	4월	4~6월	7월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촉진, 융·복합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

■ 지원규모 : 755억원(신규 387억, 계속 368억)

■ 지원내용

- ① 융·복합기술개발(232억원) : 개발기간 2년, 최고 6억원 이내
 - 산연협력(173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이전기술(59억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융·복합과 관련하여 상용화되지 않은 이전기술 과제
- ② 센터연계형기술개발(155억원) : 개발기간 2년, 최고 6억원 이내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총사업비			지원방식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융·복합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 이상	20%이내	지정공모
센터연계형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 이상	20%이내	자유응모

* 단, 민간부담금 중 현금(자부담금+보증(용자)금)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융·복합	2월, 6월	3~4월 7~8월	4~5월 8~9월	6월 10월
센터연계형	4월	5~6월	7~8월	9월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619억원(신규 459억원, 계속 160억원)

■ 지원내용

- ① 수요조사 과제(304억원)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 국산 장비·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 ② 중소기업 제안과제(155억원)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수요조사	민간	최대 2년, 5억원이내	55%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공공		75%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기업제안	일반	최대 1년, 2.5억원이내 (해외는 1.5억원)	75%이내	

■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사업(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2월	3월	4월	4~ 5월
2차	5월	6월	7월	7~ 8월
3차	8월	9월	10월	10월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
- *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익계약으로 구매를 이행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2년말 기준) >

- ◇ 대기업 : 포스코, 인켈,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S엠트론, KAI, 현대중공업, 삼성SDI,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 ◇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 추가 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500억원(신규 435억원 내외, 계속 65억원 내외)

■ 지원내용

- ①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 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②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	지원금 비중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 지원금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

■ 추진일정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구 분	사업공고	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1월말	3월	4월	5월	5~6월
2차		5월	6월	7월	7~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4차		9월	10월	11월	12월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 지원규모 : 1,213억원

■ 지원내용

- ① 창업과제(1,117억원) : 창업 5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건강진단연계(1,047억원)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 멘토링(70억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② 1인 창조기업 과제(96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	최대 1년, 2억원	90% 이내	자유 응모
	투자연계 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1인 창조기업 과제		최대 1년, 1억원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창업 과제	건강진단연계	'12.12월	1~7월	3~9월	3~10월
	투자연계멘토링	3월	4월	6월	8월
1인 창조기업 과제		3월	3~4월	4~5월	6월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334억원(신규 983억원, 계속 351억원)

■ 지원내용

- ①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 ② **도약기술개발(944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주요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형 미인증 기업 - 이공계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
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성장이 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 -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 - 그 외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
연구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12.12월	매월 1~10일 (1월부터 9월까지)	연중	연중

* 예산 소진 시 신청시기가 단축될 수 있음

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생산비용 절감 지원
-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소액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료를 면제

■ 지원규모 : 400억원(신규 290억원, 계속 110억원)

■ 지원내용

- ①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을 제고, 중소기업의 생존력 강화 지원
- ② **공정개선** : 중소기업의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예시) 제조공정 단축 개선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②→③
- ③ **제조현장녹색화** : '12년에 지원 결정한 47개 과제에 대한 2차년도 계속사업비 지원('13년 종료)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 제품·공정개선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13년 신설
○ 제조현장녹색화	최대 2년, 6억원	75%이내	2차년도 사업비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12.12월	매월 1~10일 (9월 까지)	매월 11~31일	매월 말 (3~11월)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등을 수립·제공
-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유망 기술과제 발굴
-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R&D전략 수립·제공

■ 지원규모 : 55억원(신규)

■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 검증결과 우수한 기술과제는 연계지원심사를 통해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②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③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22백만원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타당성 분석 및 기획지원	연계지원 평가
R&D기획지원	1월·4월	2월·5월	3월·6월	4월·7월	5~11월	12월
과제발굴연구회	2월	3월	4월	4월	5~10월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5월	6월	7월	7월	8~11월	-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184억원(신규)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5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5년 초과)으로 구분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구 분	바우처 총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100%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100%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현금)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바우처사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2월	1~2월	매월	매월

3.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신규 인력채용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85억원

■ 지원내용

- 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사업(50억원) : 신규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 ② 취업연계교육센터 운영사업(20억원) : 중소기업에서 실제 수행되는 기술개발全过程를 이공계 대졸자에게 교육한 후 취업연계
- ③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억원) :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지도 실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최대 2년, 2,400만원	50% 이내	출연
취업연계교육센터	최대 6개월 * 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서, 교육생별 지원금액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는 않음	100%	출연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최대 1년, 2,000만원	75% 이내	출연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초·중급연구 인력지원사업	3월	3~4월 6~7월	5월 8월	6월 9월
취업연계교육 센터지원사업	3월	3~4월 6~7월	5월 8월	6월 9월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3월	4~5월	6~7월	8월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황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중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13년부터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택집중”, “저변확대” 사업구분 적용

문 의 처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선택 집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저변 확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합회 (KAIARI)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공정혁신과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공정혁신과		
인프라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공정혁신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 포터즈)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기술정책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초 중급인력, 취업연계)	기술정책과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궁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2~49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③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개 요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정부지원 최대 75% 이내)
예산규모	☛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도약기술개발(944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5)

④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 요	☛ 창업한지 5년이내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 업체당 2억원 한도, 정부지원 90%이내
예산규모	☛ 1,037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5)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개 요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분야 및 내용	☞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 지원규모 : 3,000억원, 기업 당 연간 20억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 지원규모 : 6,350억원, 기업 당 연간 30억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950억원, 기업 당 연간 1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지원규모 : 1,500억원, 기업 당 연간 20~30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월~
담당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⑥ 해외인증 획득지원

개 요	☞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중 수출업체
지원내용	☞ FD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ANVISA), EU유기농식품인증(EU2092/91) 등 182개 제품인증 획득비용의 50~90% 지원
예산규모	☞ 106.9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1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514)

⑦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개 요	☞ 수출초보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진출 확대지원을 위해 무역실무기초과정 등 수출교육, 해외시장조사 등 지원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무역실무기초과정 등 수출교육(교육비의 90%), 외국어 카달로그 및 포장 디자인 등 홍보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조사 등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예산규모	☞ 392.8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355)

⑧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개 요	☞ 외부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및 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업체
예산규모	☞ 160억원
추진일정	☞ 신청접수 : 3월~
담당자	☞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

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진단지원

개 요	☞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업 건강진단을 통해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 으로 분석·진단 - 진단비용 30만원/1MD, 4MD이내 무료진단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건강관리팀(042-481-8965)

⑩ 농수산물 가공·판매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

개 요	☞ 농가단위 소규모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영교육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소상공인진흥원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사업마인드가 부족한 소규모 창업 농업인 CEO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 교육 실시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월~
담당자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4)

⑪ 기술보증지원

개 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 우대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기술보증 우대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신용도 유의기업도 영업점장이 2억원까지 전결(일반기업 1억원) 및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도 적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일반기업 1년) 등 기술보증기금 심사규정 완화('11.7.1)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월~
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지역본·지점

⑫ PL단체보험 가입지원

개 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보험 가입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 손해보험사 직접가입비에 비해 국내 28%, 해외 20% 할인혜택 * 참여손보사(6개)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 동부화재, 롯데손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등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단체계약으로 20~28% 저렴하게 가입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월~
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PL사업부(www.plkorea.com)

식품·외식기업 애로상담

식품기업 및 외식기업 등의 경영효율화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aT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K-Food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전화상담

 1566-2272

식품기술 (ARS 1번)
외식경영 (ARS 2번)

인터넷상담

www.foodbiz.or.kr

식품외식기업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K-Food 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1층

■ 인터넷상담 신청방법

aT 푸드비즈 상담실 ▶ 온라인 상담, 전문위원 상담
(www.foodbiz.or.kr)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층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4번 출구 연결